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 분석

최유진 · 홍승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교법제 연구 12-20-⑦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 분석

최 유 진 · 홍 승 희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 분석

An Analysis of Legislation on Cyberbullying in the USA

연구자 : 최유진(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Choi, You-Jin

홍승희(원광대학교 조교수)

Hong, Seung-Hee

2012. 9.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인해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이 있음
- 흔히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이메일, 휴대전화, 블로그, 채팅방, 무선호출기, 게임시스템, 등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고, 협박, 겁주는 행위를 사이버블링라 함
- 사이버블링은 익명성, 신속성, 광범위한 확산, 시각적 충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함
- 국내에서 사이버블링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이르러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이버블링을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함
- 본 연구는 일찌감치 사이버블링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진 미국의 입법 사례를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이버블링에 관한 정교한 입법과 정책수립을 위함이 목적

II. 주요내용

- 사이버블링의 정의의 어려움과 행동유형과 그 심각성 분석
 - 사이버블링을 정의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사회학적, 법제적으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봄
 - 사이버블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행위유형에 대해서 소개
 - 한국과 미국에서의 사이버블링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
- 한국의 사이버블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을 소개하고 분석함
 -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개정되어 사이버따돌림을 명문규정으로 하고 있음
 - 사이버블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비밀침해죄’, ‘사이버스토킹’, OSP(Online-Service-Provider)의 의무규정 등이 존재함
 - 사이버블링과 관련된 형법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이 존재함
-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현황에 대해서 조사
 - 미국에서 사이버블링 입법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
 - 기존의 사이버블링과 관계된 여러 법적 구제수단의 한계에 대해 조사(Common law, 통신품위법, 사이버스토킹, 연방법)

- 현재까지 사이버블링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주는 15개의 주가 있으며(2012년 7월 기준), 5개의 주에서 입법 제시 되어 있음
- 이 15개 주의 사이버블링 입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외의 주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
- 사이버블링 금지 법안은 대부분 공립학교를 상대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제1수정 헌법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블링을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 판례를 살펴보고 사이버블링 법제와의 조화를 위한 작업이 요구됨
- 사이버블링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미국의 주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이버블링 규정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조사
- 국내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등에서 사이버블링 관련한 일정한 행위유형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산발적인 법규정들을 사이버블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대응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기에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실효성 있는 입법방안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국내에 소개된 바 없는 미국의 주별 사이버블링 관련 법제 현황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제공함
- 우리나라 사이버블링 관련 정책 및 구체적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사이버블링, Cyberbullying, Bullying, 사이버범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괴롭힘, 학교폭력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Proliferation of Internet use and the popularity of social networking brings many adverse effects and ‘Cyberbullying’ is one of those problems.
- Cyberbullying usually means that the repeated use of modern technologies including e-mail, instant message, blogs, chat rooms, pagers, cell phones to harass, threaten or intimidate others.
- Cyberbullying can be committed anonymously online and those harmful effect can be spread quickly with strong visual impact.
- Recently, the number of victims of cyberbullying is increasing in Korea and the issue of cyberbullying has been drawing attention but there is no independent laws regarding cyberbullying in Korea thus cyberbullying is being regulated by many different parts of other relevant law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implication from the enacting experience of the US, which has been studying cyberbullying issues early, for implementation of policy and enactment of cyberbullying law in Korea.

II. Main Contents

- Analysis on difficulties of defining ‘cyberbullying’ and research on forms and severity of cyberbullying
 - It is not easy to define cyberbullying but this research will look into meaning of cyberbullying both in sociologic and legislative context.
 - This research will introduce forms and negative effects of cyberbullying and look into major case of cyberbullying both in Korea and the US.

- Analysis 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relevant laws regarding cyberbullying in Korea
 - I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hich was enacted in 2004, “cyber-bullying” wa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when it was amended in March, 2012.
 - Cyberbullying can be regulated indirectly as cyber defamation, cyber infringement of secrecy, cyberstalking, or violation of OSP(Online-Service-Provider) obligations regulated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Also, cyberbullying can be punished as crime of defamation, contempt, intimidation, or compulsion.

- Analysis on enactment of cyberbullying laws in the US
 - This research will study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cyberbullying laws in the US.
 - In the absence of cyberbullying laws, victims can resort to tort laws and certain laws, such as Communication Decency Act or several federal laws, aimed at related offenses, such as harassment, or cyberstalking, but these existing legal remedies are inadequate to address the problem of cyberbullying.
 - As of July, 2012, fifteen states had enacted laws expressly stipulating 'cyberbullying' and five states have proposed cyberbullying bills.
 - This research will look into each cyberbullying laws in those fifteen states and analyz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Also, this research will study regulating scheme of cyberbullying in other states.
 - Most existing cyberbullying laws apply to the public-school forum and it means the First Amendment protection which has been held to protect student speech should be considered.
 - To minimize potential First Amendment challenges to cyberbullying laws, Supreme Court precedents governing offline speech should be applied to online context.
- After looking into legislation examples and experience from the US, this research will study the possibilities of enactment of cyberbullying laws suitable to Korean situation.

- Although there are relevant laws which can regulate cyberbullying in Korea, such as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criminal laws, these sporadically legislated laws cannot be seen to comprehensively respond to cyberbullying issues.
- There is a necessity for effective legislative measures.

III. Expected Effect

-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state legislations on cyberbullying, which has not been introduced in Korea before.
- This research is also expected to be used for preliminary data for countermeasures and policy formulation in the area of cyberbullying.

▶▶ Key Words : Cyberbullying, Bullying, Cybercrime, Cyber harassment, Cyberstalking, School Violence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 2 장 사이버블링의 개관 및 심각성	19
제 1 절 사이버블링의 정의	19
I. 정의의 어려움	19
II. 사이버블링 법제 상의 정의	20
제 2 절 사이버블링/오프라인블링의 구별과 사이버블링의 특징	21
I. 오프라인블링과 사이버블링으로의 전환	21
II. 사이버블링의 특징	22
제 3 절 사이버블링의 유형 및 심각성	23
I. 사이버블링의 유형	23
II. 사이버블링의 심각성	24
제 3 장 한국의 사이버블링 입법 현황	29
제 1 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0
I. 의 의	30

II. 사이버블링 관련 주요 내용	31
III.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및 전담기구	34
IV. 학교폭력 대응조치	36
V. 법적 보호방안	39
VI. 사이버블링 관련한 현행규정의 한계 및 개선방안	40
제 2 절 사이버블링과 정통망법	43
I. 서 설	43
II. 가해학생에게 적용가능한 사이버블링 관련 주요 규정	44
III.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가능한 사이버블링 관련 규정	47
IV. 한계 및 개선방향	49
제 3 절 사이버블링과 형법	49
I. 서 설	49
II. 사이버블링 관련 주요 규정	50
III. 한계 및 개선방향	54
제 4 장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 현황	57
제 1 절 서 설	57
제 2 절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의의	58
I. 필요성	58
II. 기존 법적 구제수단의 한계	58
제 3 절 미국의 주(州)별 사이버블링 입법	63
I. 개 관	63
II. 미국의 사이버블링의 입법적 대응 및 그 내용	67
III. 미국의 주별 사이버블링 법제의 특징 분석	85

제 4 절 사이버블링 법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87
I. 개 관	87
II. 연방대법원의 판례	88
III. 소 결	90
제 5 장 시사점 및 결론	93
제 1 절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의 시사점	93
I. 법체계 차이와 한계	93
II. 관련 미 법률의 주요 쟁점과 도입가능성	93
제 2 절 결 론	102
참 고 문 헌	10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에 의해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이 있다. 이 사이버블링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흔히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이메일, 휴대전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해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적대적 행위를 의미한다.¹⁾ 하지만 사이버블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사이버블링은 익명성, 신속성, 광범위한 확산, 시각적 충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의 심각성은 과거의 오프라인 블링과는 차이가 있다. 디지털기기가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든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때문에 그 충격이 자살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2010년에 사이버블링으로 인해 한달새 10대 청소년 7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사이버블링 연구센터²⁾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 중 약 20%가 사이버블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며, 사이버블링 피해자의 자살시도율은 무경험자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1) 조희정, 이슈와 논점 제457호 “청소년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의 현황과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2.5.23), 1쪽.

2) 미국 사이버블링 연구센터 홈페이지: www.cyberbullying.us

3) 오애리, “‘사이버 블링’ 끈질긴 모욕 美에서만 한달새 10代 7명 ‘자살’”,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08010332320710040> (2010.10.8).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사이버블링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일찌감치 이루어져 2000년 뉴햄프셔대학의 연구에서 ‘사이버블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부터 사이버블링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현황 조사와 사회적인 예방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왔다.⁴⁾

한편, 국내에서도 사이버블링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이르러야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블링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블링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개정안이 2012년 3월 21일 공포되었으나 미성년자들간에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블링에 대한 처벌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사이버블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에서 현재 사이버블링을 규율할 수 있는 여러 법률들을 살펴보고 우리보다 앞서 이에 대해 연구하고 사이버블링 입법화를 시작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특징들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국내에서 사이버블링 법제에 대한 정책마련과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사이버블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의 전반부에는 사이버블링의 정의의 어려움과 사회학적인 정의와 법제상의 정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며, 후반부에는 사이

4) 조희정, 앞의 자료집, 1쪽.

버블링의 유형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블링 관련 입법현황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독자적인 사이버블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입법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블링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관련규정들을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하며, 그것들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현황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으로 사이버블링 현상을 규제하는데에 어떠한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한계점의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화된 사이버블링 법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사이버블링이 입법화 되어있는 15개의 주의 법제의 자세한 내용과 특징들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법현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연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으로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참고로 제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이버블링을 국내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적절한 번역 용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블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사이버블링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도 ‘블링’이라는 용어를 그래도 사용하고자 한다.⁵⁾

한편, 본 연구 보고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서술을 위하여 국내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⁶⁾

5) 용어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사이버블링의 개관 및 심각성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6) 이 연구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승희 조교수와 공동 진행되었다.

제 2 장 사이버블링의 개관 및 심각성

제 1 절 사이버블링의 정의

I. 정의의 어려움

사이버블링을 어떻게 정의내리냐는 것에 대해서는 비단 미국과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만큼 사이버블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며, 동시에 이를 적당한 용어로 번역하기도 어렵다. 앞서서도 짧게 언급했듯이 사이버블링을 온라인 상의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하게 사이버블링에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블링을 한국말로 어떻게 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이버블링에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사이버따돌림’이라는 용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함)’에서 사용하고 있다.⁷⁾ 하지만 사이버블링은 비단 따돌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협박이나 강요, 폭력 등의 전반적인 괴롭힘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단순히 ‘따돌림’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따돌림을 학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블링은 학교 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임을 감안하였을 때에, 사이버블링을 과연 학폭법에서의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따돌림’이 2012년 1월 개정에서 추가되었으며, ‘사이버따돌림’은 2012년 3월 개정에서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 한국의 사이버블링 입법 현황에서 자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따돌림으로 단순 정의내릴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II. 사이버블링 법제 상의 정의

미국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과(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 따르면 사이버블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이메일, 휴대전화, 블로그, 채팅방, 무선호출기, 게임시스템, 등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고, 협박, 겁주는 행위라 한다.⁸⁾ 즉, 사이버블링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어른들 사이에서도 일어 날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사이버블링을 정의내린 것이며, 법제상에서의 사이버블링의 정의는 이와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제4장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으나, 미국 대부분의 주(州)의 사이버블링 법제는 사이버블링을 ‘교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일어난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 범위로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미국의 사이버블링의 법제는 사이버블링을 청소년들의 교육상의 범위 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이유가 있겠으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성인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까지 규제하는 것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성인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Cyberstalking, Cyberharssment 관련 법제로 규율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Joan M. Gilbride and Brian M. Sher, “E-Mail, Text, Facebook...Lawsuit? Legal Minefield of Cyberbullying”, New York Law Journal, http://www.newyorklawjournal.com/PubArticleNY.jsp?id=1202519778390&EMail_Text_Facebook___Lawsuit_Legal_Minefield_of_Cyberbullying&slreturn=20120921213909 (2011. 10.24).

제 2 절 사이버블링/오프라인블링의 구별과 사이버블링의 특징

I. 오프라인블링과 사이버블링으로의 전환

오프라인블링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단 따돌림현상을 일컫는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블링(Bullying)에 대응하는 사이버블링이 탄생하기 이전에 언어적,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블링현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인터넷과 SNS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이버블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학 및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블링’과 ‘사이버블링’이라는 용어가 학문적 관심 대상으로 대두되었다.

‘블링’은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정의되어 왔으며, “언어적 블링, 비언어적 블링, 신체적 블링, 심리적 블링”의 네가지 유형 구분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이버블링이 다섯 번째의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어 교육당국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학교의 복도와 운동장 및 교실에서 행해지던 거친 용어와 신체적 접촉 등의 블링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대신에 휴대전화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의 매체를 통한 블링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미국 민주당의 산체스 의원은 사이버블링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블링이 이제 전자공간으로 옮겨갔으며, 이는 아이들이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든 블링에 시달리게 된 것이며 심지어 집안에서까지 블링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⁹⁾

9) 임상수, “사이버 블링에 대한 두 가지 대응책: 미국의 사례”, 행정안전부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왕따 진단과 해법’ 세미나 자료, 2011, 3쪽.

II. 사이버블링의 특징

일반적인 오프라인 블링과 달리 사이버블링은 익명성, 상시성, 신속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⁰⁾

1. 익명성

사이버블링은 가해자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휴대전화, 이메일, SNS 등의 사용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블로그는 외부로 드러나 블링을 알아내기가 비교적 쉬우나, 스마트폰 메신저에서의 블링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가해자이면서 다른 경우에 피해자가 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¹¹⁾

2. 상시성

과거에는 누가 괴롭혔는지를 밝히는 것이 쉬웠으며,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집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블링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이메일, 휴대전화, SNS를 통하여 24시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¹²⁾

3. 신속성

온라인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확산된다. 인터넷과 메신저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특정 대상을 괴롭힐 수 있다.¹³⁾

10) 오애리, 앞의 기사.

11) 조희정, 앞의 자료집, 2쪽.

12) 조희정, 앞의 자료집, 2쪽.

13) 조희정, 앞의 자료집, 3쪽.

4. 확산성

사이버블링은 온라인 상에 일단 어떠한 내용이 게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를 보고 퍼나를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¹⁴⁾

5. 시각적 충격

사이버블링은 녹화, 녹음 등 디지털 기기의 다양한 기능 때문에 시각적 충격을 동반한다. 과거의 낙서, 편지, 사진과 달리 생생한 동영상에 의한 충격이 피해자의 피해의식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다.¹⁵⁾

제 3 절 사이버블링의 유형 및 심각성

I. 사이버블링의 유형

사이버블링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1) 단순 문자를 통한 유형, (2) 사진 혹은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유형, (3) 보이즈메일을 통한 유형, (4) 이메일을 통한 유형, (5) 채팅방을 통한 유형, (6) 인스턴트 메시징서비스를 통한 유형, (7) 블로그나 SNS 사이트 등의 웹사이트를 통한 유형, (8) 온라인 게임의 상호작용 공간을 통한 유형 등으로 구분되곤 한다.¹⁶⁾

아이들이 과거에는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을 놀리고 장난치던 것이 요즘에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특정 아이에 관한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다른 아이들이 동조하여 비슷한 내용의 글을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14) 조희정, 앞의 자료집, 3쪽.

15) 조희정, 앞의 자료집, 3쪽.

16) 임상수, 앞의 논문, 7쪽.

비단 아이들 사이 뿐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비슷하게는 피해 학생이 속해있는 그룹 채팅방에서 그 피해학생의 관련된 인적사항을 드러내기도 하며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유형도 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인 맥락의 메시지, 그림이나 사진들을 전송하는 “sexts”의 행위도 사이버블링에 해당한다. 휴대폰을 통하여 그림이나 사진 전송이 수월해짐에 따라 이것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된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들은 채팅을 통하여 헐박과 모욕적인 욕설과 비방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다.

II. 사이버블링의 심각성

1. 한국

(1) 현황

2011년 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가운데 20% 이상이 사이버블링을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¹⁷⁾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이버블링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속성을 감안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이버블링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¹⁸⁾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안티 카페는 한국적 사이버블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 카페만 해도 1,000여 개가 넘는 실정이다.¹⁹⁾ 이 외에 메신저 집

17) 한국정보화진흥원,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왕따 진단과 해법’ 세미나 자료(2011.12.15).

18) 조희정, 앞의 자료, 2쪽.

19) 민병기, “동급생 안티카페만 1,000여 개 달해, 사이버블링 방지 핫라인 구축해야.”,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12801031424053002> (2011.11.28).

단 차단, 일촌 집단 거부 등의 현상도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2) 대표적인 사건

2012년 8월 14일, 서울의 한 여고생이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여고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으나, 실제 현실에서의 폭력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여고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여고생이 초대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십수명의 아이들이 수개월동안 욕을 끊임없이 퍼부었다. 하지만 이 여고생에는 신체적인 폭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모도 선생님도 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 결국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²⁰⁾

이 밖에도 국내에서도 사이버블링에 의한 여러 피해사례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피해자들이 자살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미 국

(1) 현 황

2011년에 행해진 미국 컨슈머리포트 조사 결과, 약 백만명의 아이들이 대표적인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에서 사이버블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²¹⁾

20) 윤창기, “여고생의 죽음 불러 온 사이버 왕따”,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7/2012081701953.html (2012.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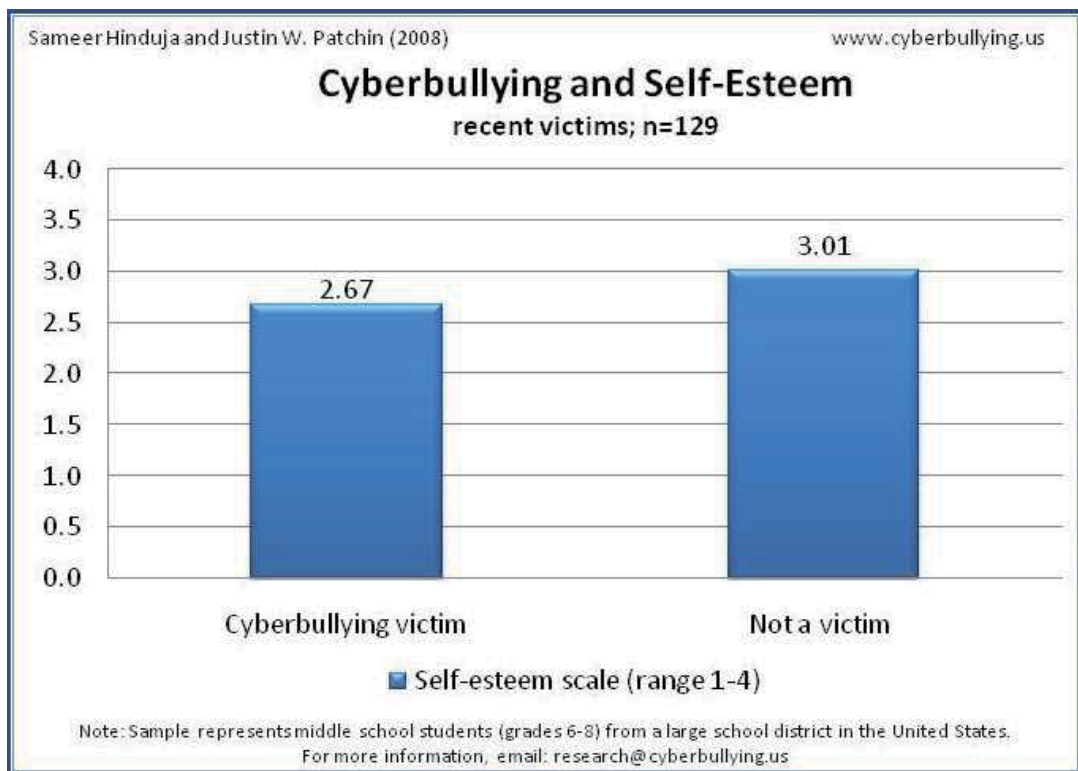
21) “Social networks, mobile phones, and scams can threaten your security”, Consumer Report Magazine, <http://www.consumerreports.org/cro/magazine-archive/2011/june/electronics-computers/state-of-the-net/online-exposure/index.htm> (2011.6).

또한 사이버블링 연구센터(Cyberbullying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체 학생의 약 20%가 사이버블링을 경험해 본적이 있다고 하였다.²²⁾

(2) 결 과

사이버블링 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사이버블링을 당했을 때에는 피해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화가 나고, 슬프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이버블링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또한 사이버블링 피해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도 자존감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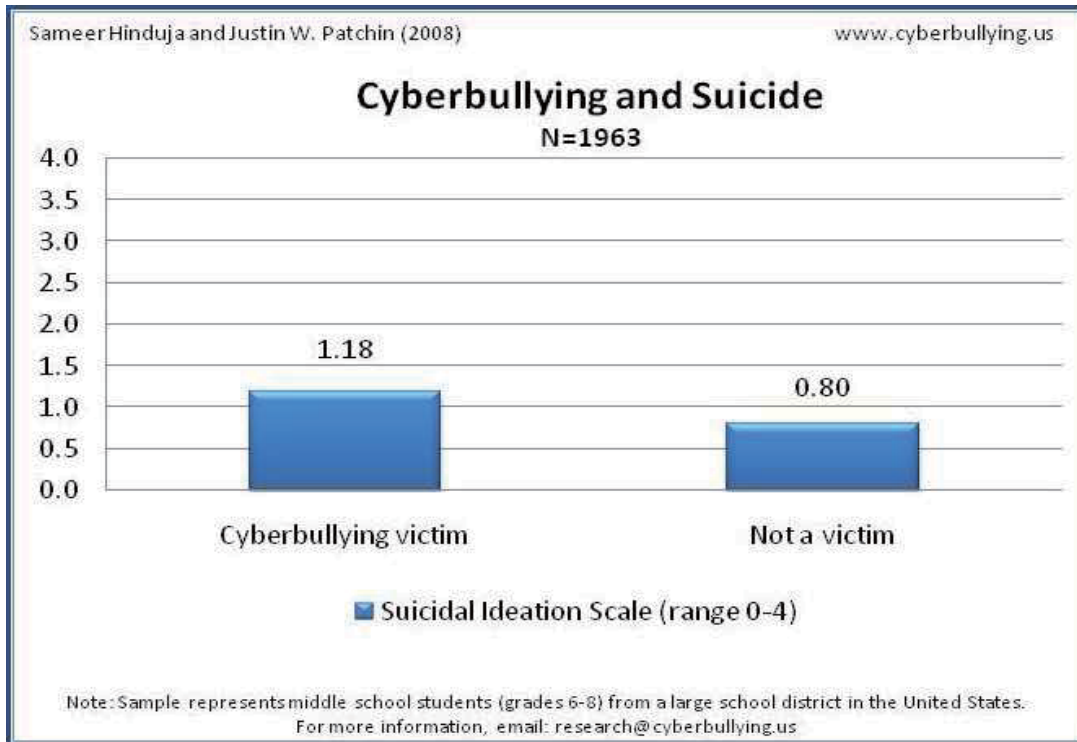


<출처: <http://www.cyberbullying.us/research.php>>

22) <http://www.cyberbullying.us/research.php>

23) *Ibid.*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사이버불링의 피해로 인하여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를 종종 접한다. 실제로 사이버불링 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이버불링의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http://www.cyberbullying.us/research.php>>

(3) 대표적인 사건

미국 내에서 2006년 당시 사이버불링이 13살 소녀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Lori Drew라는 중년 여성이 마이스페이스(MySpace)에 자신이 10대 소년인 것처럼 허위 프로필을 만들어 한 때 자신의 딸의 친구였던 이웃집 소녀 Megan Meier, (당시 13살)를 속여 자살로 몰고가 기소되었다. 10대 소녀였던 메건은 마이스페이스를 통해 만났던 Josh라는 이름의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충격을 받아 침실 옷장에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Josh라는 소년이

마로 Meier의 친구였던 사람의 엄마인 Lori Drew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²⁴⁾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적절한 관련 법규를 찾을 수 없어 1년 이상 기소가 지연됐다. 결국 연방 검찰이 Lori Drew를 해킹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2008년 세 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경범죄가 인정되고 해킹 등의 혐의는 기각돼 3년의 징역과 집행 유예를 선고받게 됐을 뿐이며 그나마도 구형 일정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기각되고 말았다. ‘Cyber-bullying’을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이 있는 후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이버블링의 입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Megan Meier의 사건이 일어난 미주리 주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사이버블링 금지 입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주에서도 사이버블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으며 사이버블링 입법을 추진하는 주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24) http://en.wikipedia.org/wiki/Suicide_of_Megan_Meier

제 3 장 한국의 사이버블링 입법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블링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법률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을 들 수 있다.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법은 학교 내 학생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블링은 학교안에서만 발생하는 청소년의 문제라 할 수 없다. 인터넷카페가 만들어지면서 이들 카페에서도 사이버블링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오늘날 모바일채팅 등을 통한 소셜네트워크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단순한 학교내의 블링이 아닌, 내 집 내 방에서도 이러한 사이버블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사이버블링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향후 법규정 개정 및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블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는 먼저 앞서 언급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절)을 들 수 있다.²⁵⁾ 그 밖에도 사이버블링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몇몇 행위유형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적용가능한 법률로 제2절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절에서는 ‘형법’의 관련 구성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형사처벌 가능한 사이버블링의 제2절과 제3절의 행위유형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인 예방수단의 한 도구가 됨으로써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사이버블링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성요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관련 법률들의 구체적인 한계들을 제4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5)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블링의 다른 표현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이버따돌림’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을 살펴보고 있는 제1절에서는 동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사이버따돌림’ 개념을 그대로 ‘사이버블링’에 대신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제 1 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I. 의 의

1. 입법목적

학폭법은 법률명(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다. 이후 가장 최근개정인 2012년 3월 개정까지 14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사이버블링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기존 ‘학교폭력’(제2조 제1호)의 범주에서 ‘따돌림’(제2조 제1호의 2)이 2012년 1월 개정에서 추가되었으며, 이후 ‘사이버따돌림’(제2조 제1호의3)은 2012년 3월 개정에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카테고리 외에도 추가로 ‘사이버따돌림’을 명문규정함으로써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2. 적용범위

학폭법은 원래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비단 교내의 학생들 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 내지 성인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학폭법은 최근 2012년 3월 개정에서 적용범위를 기존의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서 이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에까지 확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및 성인 등에 의한 사건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동법의 보호의 주체는 여전히 “학생들”임에 반하여 행위주체가 이제 학생뿐만 아닌, “누구나”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동법의 보호범위의 확대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범주내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의 경우 다르게 규정됨으로써 적용대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사이버블링 관련 주요 내용

1. 입법배경

학폭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제1호), 그 범주 안에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등 외에 ‘따돌림’과 ‘사이버따돌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제1호의2에서 “따돌림”을, 그리고 제1호의3에서 다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인 “사이버따돌림”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따돌림은 학폭법에서 크게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면서도 별도로 독립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최근 심각해진 학생들에 대한 “사이버블링”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엿볼 수 있다.

2. 사이버따돌림의 정의와 행위유형

(1) 정 의

먼저 학폭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3).

(2) 행위유형분석

이러한 정의규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학폭법에서 적용되는 사이버블링의 구성요건은 첫째,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것, 둘째,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 셋째,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또는 넷째,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다섯째,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여섯째, 상대방이 고통을 느껴야 한다.

첫째, 학폭법의 ‘사이버따돌림’은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동법에서는 이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기기”라고 규정하였으나, 인터넷은 기기가 아닌 기기와 기기사이를 연결해주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법에서는 “휴대전화, 랩톱(노트북),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이버따돌림은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주체도 “학생”이고, 행위객체인 피해자도 “학생”이다. 이는 사이버따돌림의 광의적 폭력유형인 ‘학교폭력’의 대상 및 최근 개정취지와는 상반된 것이다. 다른 한편 비슷한 유형인 ‘따돌림’에 있어서도 행위객체가 다른데,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행위주체가 학생임에 반하여 행위객체는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정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보호의 범위는 ‘학교폭력’이 행위주체를 ‘누구나’로 행위객체를 ‘학생’으로 함으로써 가장 크고, 그 다음 ‘따돌림’이 행위주체를 ‘2인 이상의 학생들’로 행위객체를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다음 크고, ‘사이버따돌림’은 행위주체와 행위객체를 모두 ‘학생들’로 그 범위가 가장 좁음으로써 학생들 간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이버따돌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여야 한다. 이때 과연 얼마만큼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동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렇다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판단은 결국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기준으

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이버블링(사이버따돌림)²⁶⁾의 행위가 민형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큰데, 그럴 때에는 사이버블링이 아닌, “사이버스토킹”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²⁷⁾ 따라서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때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기준은 피해자가 아닌 ‘합리적인 평균적인 사람’에 의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피해감정에 의존할 경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법적 판단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불법의 기준이 객관화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폭법에서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기 때문에 순수히 사이버블링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넷째, 사이버따돌림은 또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문제가 된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함)에 의한 ‘사이버비밀침해죄’가 또한 성립하여(제4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71조 제11호).²⁸⁾

다섯째, 사이버따돌림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도 성립한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당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여섯째, 앞서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는 학생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이버따돌림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학폭법을

26) 학폭법에서는 사이버블링의 현상이 사이버따돌림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서술되었다.

27) 실제로 독일에서 스토킹(Nachstellen)은 2007년 3월 22일 제40차 형법개정으로 형법 제238조에 새롭게 편입되어 형사처벌 적용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8) 이에 대해서도 후술한다.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은 -형법이 행위자형법임에 반하여- 피해자의 법감정이 중심을 이룰 수 밖에 없다. 물론 학폭법이 학교폭력 자체나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직접적인 -형법 뿐만 아니라 민법적인- 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법감정에 의존하는 법적 구조에 대해 큰 부담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부터 전학 및 퇴학에 이르기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학폭법 제17조) 피해자지향적인 판단기준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도 없다.

Ⅲ.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및 전담기구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 위원회와 전담기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회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와 전담기구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먼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함)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8조). 이러한 대책위원회는 첫째, 학교폭력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둘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나아가 셋째,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요청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또한 학폭법에서는 별도로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나 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9조). 이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는 첫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둘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상담, 치료,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에 건의할 수 있다(제10조).

그밖에도 지역에서는 지역위원회와는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를 두어야 한다(제10조의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심의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다(제12조). 이러한 ‘자치위원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에 관여할 수 있는데,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체제의 구축과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방안, 셋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넷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한다(제12조 제2항). 이러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 및 분쟁조정 등을 관장함으로써 학교폭력과는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전담기구

그밖에도 학교에서는 별도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제14조). 그런데 이러한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시행령 제16조), 독자적 권한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5. 소 결

이러한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성임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시·도 소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 소속
<전문상담교사 및 전담기구>	-----> 학교 소속

그런데 각 위원회는 각 해당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의 상하관련성은 없으며 거의 독자적인 구성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학교 소속의 자치위원회와 전담기구만이 보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이 있을 뿐이다.

IV. 학교폭력 대응조치

사이버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는 사전적 대책과 사후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대책으로는 ‘예방’이 있고 사후적 대책으로는 ‘화해’ 등의 분쟁조정과 ‘징계’ 등의 처분을 들 수 있다. 사이버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은 사전적 대책인 예방이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첫째, -일반인들 간의 폭력과 달리- 학교폭력이 학교라고 하는 제도권에서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하고, 둘째,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이건 사후적 처분을 받는 가해학생이건 모두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학생의 피해감이나 증징계의 경우 처분 받은 학생 모두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은 가급적 예방적 조치를 우선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사전적 조치로서의 예방

먼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한다(제15조 제1항). 이러한 예방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은 개정전 법률에서도 있었으나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은 2012년 3월 개정(5월 1일 시행)에서 마련된 부분이다. 즉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부터 일단 “학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만이 아닌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정은 학교폭력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과 공존되지 않는 예방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응 및 그 심각성에 대한 관점이 학교와 가정이 상호 공존되어야 교육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나 최근인 2012년 3월 개정에서 적극 반영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학부모도 적극 동참되어야 함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학부모 대상 교육은 강제규

정은 아니어서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불참한 학부모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학교입장에서도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2. 사후적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다음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적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그것이다(제16조).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반면에 가해학생에게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으로부터 학교장이 첫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둘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셋째, 교내 봉사활동, 넷째, 사회봉사활동, 다섯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비교적 경미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이러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한 학생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병과하여 조치가 가중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반영되었다(제17조 제2항).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비단 법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중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조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둘째,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셋째, 해당 조치로부터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넷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다섯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9조).

한편 학폭법은 2012년 3월 개정으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이수 받도록 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7조 제9항). 단순 예방교육과 달리 이러한 보호자의 교육참석은 법적 구속력이 뒤따르는데,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동 개정으로 제22조 제2항에서 신설되었다.

3. 분쟁조정제도

또한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8조). 그 내용으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또는 그 보호자들간에 손해배상 관련하여 합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론 분쟁조정의 신청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에서 자치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이뤄진다(시행령 제25조). 이때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박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은 중지될 수 있다(시행령 제28조).

V. 법적 보호방안

학폭법에서는 별도의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다만 비밀누설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인데,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던 자가 업무로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

조 제1항).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로는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둘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셋째, 그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내용 등이다(시행령 제33조).

VI. 사이버블링 관련한 현행규정의 한계 및 개선방안

앞에서는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하여 학폭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이버블링의 경우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하지만 ‘사이버’라고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광의적 의미의 학교폭력의 범주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대응과는 좀 더 차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 학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따돌림’이라고 하는 정의가 행위유형에 부합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동법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에서는 사이버블링을 ‘사이버따돌림’으로 제2조 제1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따돌림은 동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며, 또한 동조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따돌림’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유형으로 분류된 정의로 보여진다. 그런데 ‘사이버따돌림’은 물론이고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의 일상적 의미와 학폭법에서의 정의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따돌림’이라 함은 ‘멀리하다’, ‘외면하다’ 등과 같은 의미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놀이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고 거부(rejection, exclusion)하거나 소외(isolation)시키는 일련의 소극적인 행동들을 의미한다.²⁹⁾ 물론 이러한 따돌림은 단순히 멀리하는 소극적인 행동뿐

29) 이러한 개념이해와 함께 따돌림과 괴롭힘을 구분하고 있는 글로는 김혜원,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2011.5), 324쪽 참조.

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괴롭힘으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따돌림’과 ‘괴롭힘’은 행위의 적극성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인식에서도 차이가 난다.³⁰⁾ 즉 ‘따돌림’은 따돌림 당하는 피해자 본인 이외의 외부에서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단지 이들과 곁에 있는 또래학생들로부터 추정만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괴롭힘’은 당사자 외의 제3자가 이러한 가해와 피해를 보다 더 인지하기가 쉽다. 따라서 그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상적 의미에서 떨어져 있는 학폭법에서의 ‘따돌림’과 함께 ‘사이버따돌림’은 그 정의에서 보건데 ‘괴롭힘’과 ‘사이버괴롭힘’으로 바꿔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 행위주체와 행위객체에 있어서는 학폭법의 정의규정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이버따돌림’ 내지 ‘사이버블링’은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국경을 넘어서까지 무한히 확대될 여지가 있다. 또한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모두가 대등한 관계로 상정되는 ‘사이버’라는 공간적 특수성은 행위주체가 같은 집단의 학생이 아닐 경우, 학생신분의 상대방은 학생이라는 집단소속주체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달리 보호받아야 할 명분은 약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현행 규정과 같은 적용범위의 차별성은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이버따돌림에서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불명확함이다. 학폭법 적용대상인 사이버따돌림이 비록 (민형사상) 법적 제재의 대상은 아니나, 적어도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 등의 조치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를 수반하는 행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최소한의 기준도 제시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이는 가해학생에 대

30) 같은 지적으로는 김혜원, 위의 글, 324쪽 참조.

한 더욱 회복 불가능한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재기준의 불명확성은 동 처분의 정당성을 흔들리게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행령에서는 적어도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입게 되는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피해의 범위가 의료 전문가의 감정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는 개괄적으로라도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이버따돌림은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침해죄’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사이버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조치(법 제15조 또는 시행령 제17조)에 있어서 사이버따돌림의 경우나 학교폭력의 경우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죄책을³¹⁾ 함께 설명함으로써 사이버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인식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다섯째, 학폭법에서 학교폭력의 대응조치로서 예방이라는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따돌림’은 기존의 학교폭력과는 다른 행위양태이고 나아가 ‘따돌림’과도 다른 행위양태인데 사이버라는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포괄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주로 그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적어도 동법 제2조에서 별도로 정의되고 있는 ‘학교폭력’, ‘따돌림’ 나아가 ‘사이버따돌림’은 별도의 다른 입법 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므로 그 사전적 조치나 사후적 조치에 있어서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학교폭력’ 중심의 예방교육 내지 징계조치 등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따돌림’에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사전적 대응조치로서 동법은 ‘예방교육’(제15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방교육은 2012년 3월 개정에 의해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31) 바로 뒤에서 소개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은 권고규정일 뿐 강제 및 의무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제 2 절 사이버블링과 정통방법

사이버블링은 일종의 사이버,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탈행위라는 점에서 특정 행위의 경우 사이버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여러 법률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적용은 사이버블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I. 서 설

정통방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일탈행위들을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이다. 사이버블링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유형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커뮤니티 게시판, 모바일 채팅앱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언어적 폭력을 들 수 있다. 즉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블링’은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 다시 말하면 무시하기, 외면하기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지만 대면성이 없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블링’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발생한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사이버모욕죄가 없으므로 형법상의 모욕죄 적용가능) 등이 적용가능하며, 나아가 사이버블링 피해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사이버비밀침해죄 등이 적용 가능하다.

한편 사이버블링에서 초래되는 특정행위로부터 법적 적용대상은 비단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해당 인터넷게시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

에게도 적용된다. 즉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침해는 더 이상 당사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련된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단순히 사이버블링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뿐만 아니라,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가해학생에게 적용가능한 사이버블링 관련 주요 규정

1. 사이버명예훼손

먼저 사이버블링은 사이버명예훼손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블링의 한 유형이 되는 학폭법의 사이버따돌림에 대해서도 학폭법 제2조 제1호의3에서는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이버블링은 사이버명예훼손을 수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우리 법률은 일반명예훼손죄를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이버’라고 하는 강한 전파성 수단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형법 외에 별도로 정통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까지 처하게 된다.³²⁾

32) 정통망법 위반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강한 ‘전파성’수단을 이용함으로써 피해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법이 가중된 형태라고 하겠다. 그러나 ‘인터넷’은 전파성은 크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나 ‘장기간의 기록보존성’이 출판물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이버블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상대학생의 명예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한편 동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게 되면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70조 제3항).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구체적인 사이버블링 관련 분쟁시 뒤에서 살펴볼 ‘분쟁조정제도’와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장에서 별도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사이버비밀침해죄

사이버블링에 해당하는 행위시, 많은 경우에는 또한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유사한 행위인 사이버따돌림에 대해 학폭법 제2조 제1호의3에서도 “...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포하여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사이버개인정보침해는 사이버블링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통방법 제49조 위반인 ‘사이버비밀침해죄’가 고려될 수 있다. 정통방법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제49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1조). 따라서 특정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사이버공간에서 누설함으로써 사이버블링을 하게 되면 본조의 적용을 받게됨은 물론이다.

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중처벌에 대해 회의를 품는 글로는 권현영/배영/홍승희/황성기, 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08, 144쪽 참조; 홍승희, 명예 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2009.12), 451쪽 이하 참조.

3.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블링의 경우, 사이버스토킹(제73조,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학폭법에서도 “...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 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사이버따돌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학폭법 제2조 제1호의3). 따라서 사이버블링과 사이버스토킹은 매우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은 일반 스토킹을 사이버공간을 이용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이버스토킹이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함으로써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 물리공간에서 발생하던 일반스토킹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상공간인 전자메일, 인터넷채팅, 인터넷게시판, 전화문자 등을 통하여 글이나 음향, 부호 등을 반복하여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변화된 것이다.

요즘은 초등학생들까지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현실이 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중고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초등학생도)이 휴대폰을 소지하여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는 일은 이제 일상다반사가 되었으며, 나아가 학생들 간의 그룹채팅 등을 통해서도 잦은 의사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블링은 이제 휴대폰문자 등을 통해서 매우 손쉽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는데, 많은 경우 “장난삼아” 한다고 함으로써 실제로 이러한 피해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에도 의감이나 죄책감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스토킹과 유사한 이러한 사이버블링에 대해서는 정통방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 성립하며, 제73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다(제74조 제2항). 즉 설령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블링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되면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없다. 즉 처벌이 피해자의 법감정이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당사자의 자발적 해소라는 점에서 뒤에서 살펴볼 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소송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가능한 사이버블링 관련 규정

한편 사이버블링이 행해지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이버블링에서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이하 ‘OSP’라 함)³³⁾에게도 정통방법상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권리보호

먼저 OSP에게는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권리보호가 의무지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OSP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4조 제2항). 그러나

3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한 자를 말한다(정통방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OSP(Online-Service-Provider) 또는 ISP(Internet Service-Provider)로 지칭되고 있다. 엄밀하게는 구분되어야 하나 여기에서는 “OSP”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규정은 권고규정일 뿐 이러한 권리보호 위반 시 특별한 법적 제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삭제의무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³⁴⁾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의2 제1항). 이러한 내용을 지득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관련 사실들을 소명하여 OSP에게 직접 삭제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정보통신서비스의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의 글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게재됨으로써 사이버블링이 이뤄지게 되면 피해학생은 학폭법에 따라 학교의 관련 자치위원회나 전문상담교사 및 전담기구에 상담하고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해당 글이 게재된 관련 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삭제 및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OSP는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게재된 정보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가 있는지를 자체판단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2, 제44조의3).

그러나 문제는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은 최종 판단기구인 법원에서조차, 그리고 학계에서조차 이견이 매우 심한 행위로서 OSP가 그러한 판단의 부담을 떠안을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OSP는 30일 이내에 한해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의2 제4항).

34) 임시조치는 다른 말로 ‘블라인드(Blind)’조치라고도 하는데, 즉 DB에는 정보가 남아있지만 외부에는 보이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차단막을 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OSP에 대한 해당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권고규정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IV. 한계 및 개선방향

사이버블링과 관련해서 정통방법을 볼 때, 일부 행위유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법을 인식하고 있기는 쉽지 않다. 특히 동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14세이므로(형법 제9조), 일부 중학생과 그리고 고등학생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정통방법 위반이 되는 사이버블링의 유형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동법과 사이버블링의 주요 법률이 되는 학폭법이 서로 연관되지 않음으로써 동법의 인식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폭법에서 이러한 정통방법상의 적용가능 유형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기술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제 3 절 사이버블링과 형법

I. 서 설

사이버블링은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가상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일정 행위유형의 경우, 정통방법 적용을 받게 됨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통방법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형법상의 구성요건과 중첩하지만 가중처벌되는 구조를 띠기도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유형이지만 정통방법상의 구성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형법 적용을 받는 행위 유형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그리고 강요죄 등이다.

II. 사이버블링 관련 주요 규정

1. 명예훼손죄

제2절에서 살펴본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유사한 형법상의 일반명예훼손죄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일부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된다. 먼저 일정 사이버블링 행위가 사이버명예훼손죄(정통망법 제70조)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학생을 ‘비방할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사이버블링에서 학생간에 이뤄지는 대부분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사이버블링의 경우, 실제로는 정통망법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 보다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더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성립한다(제307조). 따라서 사이버블링시, 가해학생이 ‘비방목적 없이’ 가상공간에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사실의 적시로부터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제308조 제2항).

이때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公然性)’,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공연성의 문제를 ‘전파성이론’을 가지고서 해결하는데,³⁵⁾ 즉 특정 한 사람에게 전한 말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다.³⁶⁾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위나

35) 물론 판례의 전파성이론에 따를 경우, 공연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됨으로써 형법 적용을 확대시킨다는 지적이 학계의 다수견해이다.

36) 현재 2004.9.23., 2004헌마383; 대판 1992.5.26., 92도445; 1989.7.11., 89도886; 1998.9.8.,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가치판단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가치판단의 경우 증거가 가능하지 않지만, 사실의 경우 증명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개념의 구분이 요청되고 있다.³⁷⁾

사이버블링과 관련해서 보면, 인터넷공간이나 문자메시지로 특정 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적시하여 전송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때 인터넷공간은 대표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만일 피해학생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문자를 자기가 타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때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특정 피해학생이 아닌, 다른 한명에게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해서 전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형법상의 일반명예훼손죄도, 정통방법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다(제312조). 이로써 명예훼손이라는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표준적인 합리적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맡겨진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⁸⁾

2. 모욕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정통방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 적용으로 법정형이 가중되고 있으나,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아직 별도의 규정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³⁹⁾ 우리나라를 포함

98도1949; 2004.4.9., 2004도340.

37) 물론 이러한 사실과 가치판단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38) 이러한 관점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의 문제를 지적인 견해로는 홍승희, 정보통신범죄의 전망,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2007), 26쪽 이하 참조.

39) 물론 특정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하여 사이버모욕죄는 지속적으로 입법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홍승희, 명예 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2009.12), 43쪽 이하.

하여,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사이버모욕죄라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하는 입법례는 없다. 따라서 모욕을 함으로써 사이버블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일반모욕죄(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먼저 모욕 행위란 사실에 대한 적시없이 공연히 경멸 등의 부정적인 가치판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멸의 의사표시로는 예컨대 “도둑놈”, “죽일 놈”, “애꾸눈, 병신”⁴⁰⁾ 등의 욕설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제312조 제1항).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학생간의 분쟁발생시 가급적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분쟁조정에서 유용한 소송조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⁴¹⁾

3. 협박죄

사이버블링은 또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상대학생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협박죄(제283조)가 성립할 수 있다. 협박죄에서 규정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고지내용은 일일이 구체성을 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해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해악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 따라서 침해되는 법익은 생명, 신체, 자유 뿐만 아니라 명예, 비

40) 대판 1994.10.25., 94도1770.

41) 물론 사이버블링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예를 들면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친고죄가 오히려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또다시 괴롭히는 악의적 수단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

밀 등도 포함한다. 하지만 “두고보자”,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폭언일 뿐 협박죄의 해악고지는 아니다.⁴²⁾ 또한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범죄가 되거나 불법한 내용일 필요도 없다고 한다. 고지된 해악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한 가치의 침해 또는 상실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침해되는 법익의 주체는 협박받은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 즉 가족도 해당한다. 가해학생이 이러한 협박행위에 의한 사이버블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경우, 이러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되지 않는다(제283조 제3항).

한편 협박죄는 다수설에서는 위험범으로 파악하여, 해악고지의 결과 피해학생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가졌는가 하는 점은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인 피해학생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협박죄는 성립한다. 또한 설령 해악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미수로 처벌된다(제286조).

이러한 협박행위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해 상습적으로 일어날 경우, 형법에서는 상습협박죄(제285조)를 규정함으로써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습은 개념적으로 같은 성질의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나타나는 범죄적 성향을 말하는데, 문제는 가중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상습성’의 기준이다.⁴³⁾ 법률에서 명확하게 상습의 기준을

42) 대판 1974.10.8., 74도1892; 1984.6.26., 84도648; 1986.7.22., 86도1140 등.

43) 법률에서 상습의 기준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중대한 법률흠결이라, 조속히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18/21 참조.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습협박죄는 일반협박죄의 1/2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강요죄

사이버블링은 또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협박하여 피해학생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아닌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이버블링에서는 주로 협박을 통해 강요가 이뤄지는데, 이때 협박은 협박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로부터 또한 피해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부작위), 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작위)으로써 본죄가 성립한다.

강요죄 역시 미수범을 처벌함으로써, 폭행·협박은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하였다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미수죄가 성립한다(제324조의5).

Ⅲ. 한계 및 개선방향

사이버블링과 관련하여 형법의 적용 구성요건 또한 현재의 입법형태로는 사이버블링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제2절의 정통망법에서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형법에서도 이러한 적용 가능한 사이버블링의 유형은 학폭법 내지 독자적인 사이버블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현재 학교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블링

을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 구성요건이 정통방법, 형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찾기란 일반인 나아가 학생들에게 있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폭법에서 사이버따돌림시 형사처벌 가능한 구성요건과 적용 법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제 4 장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 현황

제 1 절 서 설

사이버블링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보기술 등을 이용하여 고의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사회현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 사이버블링 입법을 제안하거나 사이버블링 법(Cyberbullying Law)을 입법화시켰다. 또한 많은 학구(School districts, 學區)에서도 사이버블링을 방지하는 정책 등을 펼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블링 금지 법안(Anti-Bullying Law)을 통과시켰는데 이러한 주들⁴⁴⁾이 모두 사이버블링의 입법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주의 입법자들이 사이버블링 법안에 대해서 입법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미국은 인터넷을 통하여 헐박을 가하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물질적인 것을 갈취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방법을 사이버블링 현상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012년 현재 미국에서도 사이버블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7월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15개의 주에서 사이버블링 법제⁴⁵⁾를 가지고 있으며, 5개의 주에서 입법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44) 미국은 현재 50개 주에서 몬타나주를 제외한 49개주에서 Anti-Bullying Law를 입법화시켰다. 출처: http://stopcyberbullying.org/what_is_cyberbullying_exactly.html

45) 본 연구에서는 법안에 ‘Cyberbullying’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주만 Cyberbullying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Electronic harassment’ 등으로 사이버블링 현상을 우회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주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사이버블링 입법에 성공한 15개의 주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칸자스, 루이지아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워싱턴 주이다. 입법제시 되어있는 5개의 주에는 조지아, 일리노이, 캔터키, 마인, 네브라스카 주가 해당된다.

2010년 7월에는 5개의 주에서, 2011년 11월에는 10개의 주에서 입법화하였던 것을 살펴볼 때에 사이버블링 법안의 증가 추이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 사회에서의 사이버블링에 관한 관심정도를 알려주는 척도라고도 볼 수 있겠다.

제 2 절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의의

I. 필요성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 내에서 메건 메이어 사건 이후 일찌감치 사이버블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사이버블링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사이버블링을 “emerging public health problem”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사이버블링의 피해자들이 불법행위법(tort law)이나 관계된 법을 처벌하는 형법(criminal law), 즉 사이버희롱(cyber harassment)나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법으로 의존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법제도 사이버블링과 같은 신종현상에 대한 적합한 대체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존의 법제도들로도 어느정도 사이버블링을 처벌할 수는 있겠으나 사이버블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독자적인 사이버블링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II. 기존 법적 구제수단의 한계

1. Common law

사이버블링을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tort)상의 가능한 이론은 명예훼손(defamation) 죄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이버블링이 명예훼손의 정의인 ‘거짓 진술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⁴⁶⁾에 해당되는 것처럼

46) “harm[s] the reputation of another by making a false statement to a third person.”

보이나, 사이버블링이 명예훼손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원고는 (1) 진술의 내용이 실제로 거짓일 것, (2) 그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가했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2)에서 요구하는 ‘심각한 해’의 기준을 까다롭게 보고 있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이버블링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그 내용이 사실상 부인하기 힘든 개인적인 의견, 성적 놀림, 조롱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⁴⁷⁾ 게다가 사이버블링의 피해자가 주로 10대들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에 그들이 아직 ‘명예(reputation)’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 존재한다.

또한 개인이 소를 진행하였을 때에 드는 높은 소의 비용을 고려해보았을 때에도 민사상 불법행위론에 근거한 구제는 피해자들에게 실효성이 낮은 수단이다.⁴⁸⁾

2.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

인터넷을 통한 저속 표현물의 공유 및 확산은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CDA)가 채택되었다. 통신품위법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service providers, ISP)와 웹페이지 운영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여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230조에서 선의로 불건전한 내용물을 감시하거나 제재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⁴⁹⁾ 연방대법원 판결 *Zeran v. American Online, Inc.* 판결⁵⁰⁾에 의하면

(Black’s Law Dictionary 448, 8th ed. 2004) (defining defamation).

47) Alison Virginia King, “Constitutionality of Cyberbullying Laws: Keeping the Online Playground Safe for Both Teens and Free Speech”, *Vanderbilt Law Review* (2010.4).

48) Alison Virginia King, 앞의 논문, 853쪽.

49) 47 U.S.C. §230 (2006).

50) 524 U.S. 937 (1998)

본 조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명예훼손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이버블링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 개인들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블링의 피해자의 진정한 구제를 위해서는 사이버블링의 내용을 게재한 개인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ISP나 웹사이트 운영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Zeran 판결 이후의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사이버블링의 피해자는 ISP를 상대로 명예훼손의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ISP는 그 내용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이버블링의 내용물은 인터넷 상에서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CDA의 면책조항은 ISP뿐 아니라 웹사이트, 리스트서브(listserv) 운영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이러한 면책조항이 그들에게 사이버블링의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하는 단점을 발생시켰다.

3. 사이버블링과 관계된 형법

(1)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

사이버스토킹이라는 용어는 개인, 일정한 그룹의 개인 또는 조직을 희롱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인터넷 또는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을 포함한다. 반-스토킹입법을 갖춘 주요 주의 입법과 연방규정은 상당한 감정적 고통을 야기하는 전자메일 또는 전자 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광의의 사이버스토킹 개념을 채택한다.⁵¹⁾

사이버블링은 자주 사이버스토킹과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언뜻 보기에 그 둘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

51) 그 예들은 California and Florida's statutes이다.

문이다. 하지만 사이버스토킹은 믿을만한 위협(“credible threat”)의 수준을 요구하며 이 위협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질수 있어 온라인 상의 행동만 의미하는 사이버블링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스토킹의 법제도 사이버블링의 규제에 그 적용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사이버스토킹 법은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이 믿을만한 위협(“Credible threat”)의 수준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버블링은 이러한 믿을만한 위협(“Credible threat”)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⁵²⁾ 사이버블링은 그 성질이 뚜렷한 위협은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많다. 설사 믿을만한 위협(“Credible threat”)에 해당하는 사이버블링 형태를 규제한다고 해도 이는 검사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이버스토킹 법을 사이버블링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연방법

연방통신법(Interstate Communications Act)은 타인을 신체적인 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협을 주(州)간 전송하는 것을 규율한다(criminalize the transmission of “any threat to injure the person of another through interstate commerce”). 하지만 이 연방통신법은 신체적인 해를 가할 위협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이버블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사이버블링이 정신적으로는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만 신체적인 위협까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Telephone Harassment Act도 사이버블링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Telephone Harassment Act는 타인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희롱하는 의도를 가지고 익명으로 통신하는 것(criminalize

52) Alison Virginia King, 앞의 논문, 853쪽, Naomi Harlin Goodno, “Cyberstalking, a New Crime: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State and Federal Laws”, 72 Mo. L. Rev. 125, 135-39 (2007) (analyzing problems with current cyberstalking laws, most of which requires a “credible threat” of violence).

the use of anonymous communications “with intent to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을 규율하는데, 많은 경우의 사이버블링은 이메일 통신이나 소셜네트워킹을 통하여 저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사이버블링을 규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사이버블링에 적용 가능한 또 다른 연방 법률로는 컴퓨터사기남용법(The federal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가 있다. 이는 전반적인 사이버블링을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부 사이버블링 현상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FAA는 컴퓨터 해킹 및 승인되지 않은 컴퓨터 사용을 불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연방법률이다. 하지만 많은 사이버블링 형태가 가해자들이 어느 특정한 웹사이트 이용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CFAA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미국 내에서 사이버블링 관련하여 크게 이슈가 되었던 Megan Meier 사건은 연방 검사가 CFAA를 근거로 가해자 Lori Drew를 기소하였다. 처음에 이 사건은 CFAA의 허용되지 않은 컴퓨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3개의 misdemeanor로 처벌되었으나, 결국에는 연방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연방지방법원의 판사인 George Wu는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CFAA의 제정연혁을 살펴보았을 때에 CFAA는 사이버블링에 적용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CFAA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만약 CFAA를 근거로 피고인 Lori Drew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이버블링의 피해를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케이스는 그리하여 사이버블링을 억제하고 사이버블링 가해자들을 처벌하는데 독립적인 법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왔다.⁵³⁾

53) Alison Virginia King, 앞의 논문, 856쪽

제 3 절 미국의 주(州)별 사이버블링 입법

I. 개 관

사이버블링은 현재까지는 주로 미성년자의 피해사례로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사실상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 Megan Meier사건 이후에 많은 주와 의회에서 사이버블링 법제가 통과되었거나 입법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사이버블링 법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미성년자까지만 규제를 해야하는 것인지, 전 연령대의 인터넷 사용자들까지 규제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미국의 사이버블링 법제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이버블링 법제는 공립학교 내에서의 사이버블링 현상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다. 즉, 학교가 사이버블링 및 블링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학교당국에서 사이버블링을 퇴치하기 위해 앞장서고 우선적으로 교내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이버블링을 향한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학생들이 공공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위협, 협박,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공공교육을 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a public education in a public-school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is reasonably free from substantial intimidation, harassment, or harm or threat of harm by another student”)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⁵⁾

공립학교 내의 범위에서 벗어난 형태의 사이버블링 현상을 규율하고 있는 주는 일리노이가 유일하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에서도 현재까지

54) *Ibid.*, p859.

55) Ark. Code Ann. §6-18-514(2007); see also Cal. Educ. Code §32261(2002) (asserting that “all pupils enrolled in the state public schools have the inalienable right to attend classes on school campuses that are safe, secure, and peaceful”).

사이버블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제는 입법안만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Harassing and Obscene Communications Act (720ILCS135/1-2)⁵⁶⁾에서 “Harassment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s”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이후에 미국 내에서 사이버블링 법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의 형태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유효한 법에 사이버블링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라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법이다. 둘째, 기존의 반-블링 법(Anti-Bullying)법에서 ‘블링’을 정의하는 규정예다가 사이버블링을 블링(bullying), 위협(intimidation), 괴롭힘(harassment)의 한 형태로 정의하는 방법이다.⁵⁷⁾

한편,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이버블링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주는 2012년 7월까지 15개 주가 있으며, 사이버블링을 포함하는 입법이 제시되어 있는 주는 현재까지 5개의 주이다. 이하에서는 사이버블링법이 의회를 통과한 15개의 주와 그 외의 주에서 어떻게 사이버블링을 규제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State Cyberbullying Laws Fact Sheet⁵⁸⁾(2012년 7월 기준)

	Anti-Bullying law	Update or law proposed	Include “Cyberbullying”	Include electronic harassment	Criminal Sanction	School Sanction
AL	YES	proposed	NO	YES	NO	NO
AK	YES	proposed	NO	NO	NO	YES

56) <http://www.ilga.gov/legislation/ilcs/ilcs3.asp?ActID=1883&ChapterID=53> (Illinois Compiled Statutes, Illinois General Assembly).

57) Alison Virginia King, 앞의 논문, 858쪽.

58) 출처: http://www.cyberbullying.us/Bullying_and_Cyberbullying_Laws.pdf

제 3 절 미국의 주(州)별 사이버불링 입법

	Anti-Bullying law	Update or law proposed	Include “Cyberbullying”	Include electronic harassment	Criminal Sanction	School Sanction
AZ	YES	NO	NO	YES	NO	YES
AR	YES	NO	YES	YES	YES	YES
CA	YES	NO	YES	YES	NO	YES
CO	YES	NO	NO	YES	NO	YES
CT	YES	NO	YES	YES	proposed	YES
DE	YES	NO	NO	YES	NO	YES
FL	YES	NO	NO	YES	NO	YES
GA	YES	proposed	proposed	YES	NO	YES
HI	YES	NO	YES	YES	proposed	YES
ID	YES	NO	NO	YES	YES	YES
IL	YES	NO	proposed	YES	NO	YES
IN	YES	proposed	NO	proposed	NO	YES
IA	YES	NO	NO	YES	NO	YES
KS	YES	NO	YES	YES	NO	YES
KY	YES	proposed	proposed	YES	YES	YES
LA	YES	NO	YES	YES	YES	YES
ME	YES	proposed	proposed	proposed	NO	YES
MD	YES	NO	NO	YES	NO	YES
MA	YES	NO	YES	YES	NO	YES
MI	YES	NO	NO	YES	proposed	NO

제 4 장 미국의 사이버불링 입법 현황

	Anti-Bullying law	Update or law proposed	Include “Cyberbullying”	Include electronic harassment	Criminal Sanction	School Sanction
MN	YES	proposed	NO	YES	NO	YES
MS	YES	NO	NO	YES	YES	YES
MO	YES	NO	YES	YES	YES	YES
MT	NO	NO	NO	NO	YES	NO
NE	YES	proposed	proposed	YES	NO	YES
NV	YES	NO	YES	YES	YES	NO
NH	YES	proposed	YES	YES	NO	NO
NJ	YES	NO	NO	YES	NO	YES
NM	YES	NO	NO	YES	NO	YES
NY	YES	NO	YES	YES	proposed	YES
NC	YES	NO	YES	YES	YES	YES
ND	YES	NO	NO	YES	YES	YES
OH	YES	NO	NO	YES	NO	YES
OK	YES	NO	NO	YES	NO	NO
OR	YES	NO	YES	YES	NO	YES
PA	YES	NO	NO	YES	NO	YES
RI	YES	NO	NO	YES	NO	NO
SC	YES	NO	NO	YES	NO	YES
SD	YES	NO	NO	YES	NO	YES
TN	YES	NO	NO	NO	YES	YES

	Anti-Bullying law	Update or law proposed	Include “Cyberbullying”	Include electronic harassment	Criminal Sanction	School Sanction
TX	YES	NO	NO	YES	NO	YES
UT	YES	NO	YES	YES	NO	YES
VT	YES	NO	NO	NO	NO	YES
VA	YES	NO	NO	YES	NO	YES
WA	YES	NO	YES	YES	NO	YES
WV	YES	NO	NO	YES	NO	YES
WI	YES	NO	NO	NO	YES	YES
WY	YES	NO	NO	YES	NO	YES
STATE TOTALS	49	11	15	45	12	43
FEDERAL	NO	2009	proposed	proposed	proposed	NO
Washington DC	YES	NO	NO	YES	NO	YES

II. 미국의 사이버블링의 입법적 대응 및 그 내용

1. 사이버블링 법안이 있는 15개 주

(1) 아칸소

2011년 7월에 Arkansas Code Title 5, Chapter 71, Subchapter 2에서 사이버블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블링에 대하여 범죄화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게 되었다. 아칸소법에 의하

면, “communication”과 “electronic means”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사이버블링에 대하여 정의를 “electronic means를 통하여 타인을 강박하거나, 희롱, 놀래키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communication을 전송하거나, 이를 전기통신기기에 올리거나 송신하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communication은 심각한 정도이어야 하고, 반복되며 적대적인 행위로 발전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⁹⁾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사이버블링은 Class B의 misdemeanor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⁶⁰⁾

한편, 대부분의 사이버블링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주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해서 반 사이버블링 정책을 채택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칸소 주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Arkansas Code § 6-18-514(a)에서 아칸소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강박, 희롱, 피해 또는 협박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블링 현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면, 2007년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블링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블링의 정의에 “electronic means”를 통한 행위도 학교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꼭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없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영향력이 있는 행위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제의 폭을 넓게 보고 있다.⁶¹⁾ 교육환경에 침해하는 영향이 상당한 방해(“Substantial disrupt-

59) Arkansas Code Title 5, Chapter 71, Subchapter 2 (b) :

(b) A person commits the offense of cyberbullying if:

(1) He or she transmits, sends, or posts a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with the purpose to frighten, coerce, intimidate, threaten, abuse, harass, or alarm another person; and

(2) The transmission was in furtherance of severe, repeated, or hostile behavior toward the other person.

60) <http://www.arkleg.state.ar.us/assembly/2011/2011R/Acts/Act905.pdf>

61) Arkansas Code § 6-18-514(b)(1)(B)(2):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n electronic act whether or not the electronic act originated on school property or with school equipment,

tion”)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상당한 정도는 학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행위나, 학교 내 교육담당자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학급 내에서 또는 학업 도중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다.⁶²⁾ 특이한 점은 off-campus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영향이 있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캘리포니아

2010년 9월 13살의 Seth Walsh라는 소년이 동성애자라는 성적 취향을 밝히고 난 후에 학교 내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여 자살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이후로 캘리포니아 주는 일명 Seth’s Law (AB9)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교육당국이 아이들의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의무로 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생들을 성적취향, 자기 성별 인식,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괴롭힘, 차별, 위협을 강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The California Student Safety and Violence Prevention Act (AB537)는 2000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차별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통과된 The Safe Place to Learn Act (AB394)와 The Student Civil Rights Act (SB777)는 캘리포니아 교육당국(California Department of

if the electronic act is directed specifically at students or school personnel and maliciously intended for the purpose of disrupting school, and has a high likelihood of succeeding in that purpose

62) Arkansas Code § 6-18-514(a)(1)(D): (D) “Substantial disruption” means without limitation that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ccur as a result of the bullying:

- (i) Necessary cessation of instruction or educational activities;
- (ii) Inability of students or educational staff to focus on learning or function as an educational unit because of a hostile environment;
- (iii) Severe or repetitive disciplinary measures are needed in the classroom or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or
- (iv) Exhibition of other behaviors by students or educational staff that substantially interfere with the learning environment.

Education)이 각 학교에서 반-불링 정책을 창설하고 공고하고 있는지, 불링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신고(Complaint)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차별, 괴롭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법들이 캘리포니아의 학생들을 차별, 괴롭힘, 희롱의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학교들이 이러한 법들을 시행할 수 있는 강제력은 부족했다. 하지만 Seth's Law 이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학교에게 그 의무를 강제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교의 의무로는, 각 학교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들이 그들의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하는 인력을 2명이상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생님, 학교 상담사, 행정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학생들을 징벌하는 수단이 퇴학, 정학이 아닌 효과적이고 적합한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한 징벌 수단이 학생들의 괴롭힘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공교육 담당기관(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은 매년 교육당국(the Department of Education) 홈페이지에 피해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기관 등의 리스트를 등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The Interagency School Safety Demonstration Act of 1985에서 학생들의 괴롭힘, 차별, 희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including bullying committed by means of an electronic act”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2011년 AB 646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메시지를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메시지, 그림, 소리 등을 보내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팅하는 것도 포함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사이버블링을 규제하는 입법 형태를 보면 Education Code를 통하여 교육 당국에게 강한 의무를 부과하여 사이버블링을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3) 코네티컷

코네티컷은 기존의 School Bullying Laws에서 사이버블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가 2011년 SB1138(“An Act Concerning the Strengthening of School Bullying Laws”)을 통하여 사이버블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블링을 포함한 모든 블링(집단따돌림)에 대해서 학교가 반드시 이에 대한 내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 Act에서는 학교가 사이버블링을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outside of the school setting”까지로 넓게 보고 있다. 이 범위는 그 피해행위가 학교와 관계되는 장소, 활동, 프로그램과 관계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적대적인 교육 분위기를 가져오는 행위, 피해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침해를 가져온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 이를 학교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⁶³⁾

63) (1) “Bullying” means the repeated use by one or more students of a written, verbal or electronic communication or a physical act or gesture directed at another student that: (A) Causes physical or emotional harm to another student or damage to another student’s property, (B) places another student in reasonable fear of harm to himself or herself, or of damage to his or her property, (C) creates a hostile environment at school for another student, (D) infringes on the rights of another student at school, or (E) substantially disrupts the education process or the orderly operation of a school, and includes cyberbullying;

(2) “Cyberbullying” means any act of bullying through the use of the Internet, interactive and digital technologies, cellular mobile telephone or other mobile electronic devices or any electronic communications;

(3) “Mobile electronic device” means any hand-held or other portable electronic equipment

(4) 하와이

하와이는 2010년 SB2094 Safe School Act를 통하여 Hawaii Revised Statutes Chapter 302를 개정하여 기존의 사이버블링을 포함한 블링현상에 대해 교육당국이 민사적 벌금(Civil Penalties)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켰다. 따라서 사이버블링을 포함하여 블링을 행한 가해 학생의 부모나 법정관리인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USD100불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루가 지날 때 마다 각각의 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⁴⁾ 그리하여 2011년의 HB688의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블링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버블링을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행위라고 (“Cyberbullying means electronically transmitted acts...”) 규정한 반면에 개정된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적인 기계를 이용한 전송행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라고 하여 적용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였다(“Cyberbullying means an act or acts exhibited by

capable of providing data communication between two or more pers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ext messaging device, a paging device, a personal digital assistant, a laptop computer, equipment that is capable of playing a video game or a digital video disk, or equipment on which digital photographs are taken or transmitted;

(4)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ny transfer of signs, signals, writing, images, sounds, data or intelligence of any nature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by a wire, radio, electromagnetic, photoelectronic or photo-optical system;

(5) “Outside of the school setting” means at a location, activity or program that is not school related, or through the use of an electronic device or a mobile electronic device;

64) SECTION 2. Chapter 302A, Hawaii Revised Statutes, is amended by adding a new section to be appropriately designated and to read as follows : “§302A- Bullying and cyberbullying; penalty. (a) If any child of school age engages in bullying or cyberbullying, the child, and the father, mother, or legal guardian,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100 for each separate offense. Each day of each violation shall constitute a separate offense.

one student or group of students to another student or group of students that are conveyed by electronic transmission...”).

하와이에서는 이러한 반-사이버블링 및 블링 법제가 공립학교만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off-campus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가 규율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공립학교 내의 장소이거나,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이거나 교통수단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 또는 학교 소유의 컴퓨터, 네트워크,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한 행위이며(...“all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premises, at any school-sponsored functions or activities, on school-sponsored transportation, and on school computers, networks, forums, and mailing lists.”)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공립학교는 공립 유치원부터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afe School Act를 통해서 하와이는 교육당국이 사이버블링 및 블링 현상을 퇴치하기 위하여 도입하여야 할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 공무원들의 교육, 신고절차, 이를 전담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할 의무, 이러한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고해야 할 의무, 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제절차 등이 그 내용이다.⁶⁵⁾

-
- 65) (c) The department shall maintain and enforce appropriate procedures that incorporate:
- (1) Effective publicizing of the policies established pursuant to subsection (b), including adding a statement of those policies to new employee training materials, student handbooks, and any other publication that sets forth comprehensive rules, procedures, and standards of conduct for schools;
 - (2) Conducting annual training at the school level on how to promote peace and respect and how to intervene when students are engaged in bullying, cyberbullying, or harassing behavior;
 - (3) The investigation of violations of this section;
 - (4) Reporting and response mechanisms that address the failure of schools, complex areas, and administrators in implementing this section;
 - (5) Mechanisms for reporting incidents of bullying, cyberbullying, and harassment by complex areas and schools;
 - (6)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statewide statistics concerning bullying, cyberbullying, and harassment, as defined in section 302A 101;
 - (7) The filing of complaints against complex areas and schools upon their failure to comply with and implement policies pursuant to this section;

(5) 칸자스

칸자스 주에서는 2008년의 HB2758를 통하여 Statutes Annotated §72-8256를 개정하면서 사이버블링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에 대해 각 교육구의 교육당국(Board of Education of each school district)가 이를 방지할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칸자스 주에서는 하와이 주와 유사하게 교육당국이 off-campus의 행위에 대해서는

-
- (8) Establishing clear lines of accountability,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one person in the department as the primary contact regarding anti-bullying and anti-harassment policies, who shall receive copies of all formal and informal complaints, be responsible for assuring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cedures pursuant this section, and serve as the primary contact on the policies and procedures between the school district and the department;
 - (9) Requiring school employees and trained volunteers who witness incidents of bullying, cyberbullying, or harassment, or possess reliable information that would lead a reasonable person to suspect that a person is a target of bullying, cyberbullying, or harassment, to promptly report those incidents or that information to the school principal, complex area superintendent, or superintendent;
 - (10) Prompt investigation of reports or complaints of bullying, cyberbullying, or harassment, and identification of either the principal or the principal's designee as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 (11) Delineation of the range of ways in which a school will respond once an incident of bullying, cyberbullying, or harassment is identified, including a range of potential age-appropriate education-focused consequences that correspond to the prohibited bullying, cyberbullying, and harassment acts;
 - (12)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referrals or resources to student victims, perpetrators, and their respective families, if necessary;
 - (13) Provisions that prohibit reprisal or retaliation against any person who reports an act of bullying, cyberbullying, or harassment and describe appropriate remedial action for a person who engages in reprisal or retaliation;
 - (14) Provisions that allow for anonymous reporting while clarifying that no remedial action shall be undertaken solely on the basis of an anonymous report;
 - (15) The collection, reporting, and analyzing, at least on an annual basis, of data on incidents of bullying, cyberbullying, and harassment; and
 - (16) The establishment of a school community culture that integrates the aloha spirit, evidence-based anti-bullying and anti-harassment policies and procedures, and peace promoting elements into each school's curriculum, and creates and encourages an environment of safety and respect for all.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학교 내에서도, 학교가 후원하는 차량이나, 활동, 이벤트 중에 일어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하와이 주가 학교 소유의 컴퓨터, 네트워크,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한 행위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율 범위를 제시한 반면 칸자스 주는 학교 재산을 이용하는 도중에 일어난 행위(“...while utilizing school property”...)라고만 제시하고 있어 규율이 가능한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루이지아나

루이지아나 주에서는 2010년 HS1259이 통과되면서 사이버블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범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루이지아에서는 사이버블링을 18살 이하의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문자, 사진, 문건, 통화 등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⁶⁶⁾ 그리고 사이버블링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이를 저지르는 자를 USD500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이를 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병과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루이지아나 주에서도 공립학교에게 학생들의 행동을 규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이버블링을 포함한 블링 현상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0년 HB 1458를 통하여 R.S. 16:416:13 (Student code of conduct section 416.13.)의 조항을 신설하면서 학교는 off school property에서 일어난 사이버블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피해학생이 학교 내에 있을 때까지 미치

66) H.B. 1259, Act 989 “Cyberbullying means: harassment, intimidation, or bullying of a student on school property by another student using a computer, mobile phone, or other interactive or digital technology OR harassment, intimidation, or bullying of a student while off school property by another student using any such means when the action or actions are intended to have an effect on the student when the student is on school property.”

게 하게 한다면 그러한 off school 행위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루이지아나 주는 특이한 점으로 2001년부터 공립학교가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ies)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블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과 그러한 학생의 부모들을 위한 분쟁해결교실(Conflict resolution class)을 만들어 학교가 학생과 그 부모가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출석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그리고 분쟁해결교실의 참가비로 최대 100불의 참가비를 받을 수도 있다.

(7) 메사추세츠

메사추세츠 주는 2010년 5월에 승인된 법안(An Act relative to bullying in school)를 통하여 사이버블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메사추세츠는 사이버블링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즉, 교육과정이나 일반적인 학교생활에 중요하고 상당한 방해가 있는 행위라고 보면서 이러한 방해행위는 학교와 관계없는 장소, 활동, 기능이나 프로그램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가 소유하거나, 학교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술이나 전자기기어야할 요건도 없다. 사이버블링 행위가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하는대에 적대적인 환경을 유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요하고 상당한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이버블링 현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⁶⁷⁾ 이 법안에서는 자세하게 다음과 같은 행위도 사이버블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타인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웹페이지나 블로그를 창설하는 행위, (2) 사

67) those behaviors that “materially and substantially disrupts the education process or the orderly operation of the school.” Includes behaviors that occur: “at a location, activity, function or program that is not school-related, or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or an electronic device that is not owned, leased or used by a school district or school, if the bullying creates a hostile environment at school for the victim, infringes on the rights of the victim at school or materially and substantially disrupts the education process or the orderly operation of a school.”

이버블링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메시지의 저자를 대중이 알만한 사람인 것으로 위장한 경우, (3) 사이버블링의 매개물인 전자통신수단을 2인 이상에게 배포한 행위 또는 1인이상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수단에 내용물을 게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메사추세츠 주에서도 역시 학교가 사이버블링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2010년의 통과된 SB2283(An Act relative to bullying in schools)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는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해당이 된다. 각 지역구의 공립, 사립학교는 사이버블링을 포함한 블링을 금지하는 정책과 이를 위한 절차와 인력을 배치할 것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lan”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학교에서 선생님, 학교 직원, 전문가, 자원봉사, 행정직원, 지역대표, 부모, 후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해지며, 여기에는 절차, 신고하는 방법, 조사절차,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의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와 후견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lan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야 한다.

(8) 미주리

미주리 법(Missouri Revised Statutes) Chapter 160에서는 사이버블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사이버블링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블링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Bullying may consists of physical actions, including gestures, or oral, cyberbullying, electronic, or written communication, and any threat of retaliation for reporting of such acts.”) 미주리 주에서는 사이버블링을 형법 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주리 법 565.090, 565.225에서는 각각 harassment, stalking을 형법상의 범

죄라고 규제하고 있는데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사이버블링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S.B.818&795를 통하여 새롭게 법을 개정하였다. harassment는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협박이나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할 때에 해당되며, stalking은 이러한 harassment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를 일컫는다. harassment와 staling은 모두 class A misdemeanor의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에는 class D felony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네바다

2010년 SB163을 통하여 NRS388.121-388.139를 개정하면서 사이버블링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게 되었다. 기존에 네바다 주에서 공립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사이버블링을 포함한 블링 현상에 대해 학교가 이를 방지할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사이버블링은 electronic communication을 통한 블링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electronic communication을 전화, 휴대폰, 컴퓨터 또는 그와 유사한 매개체를 통한 어떠한 서면, 언어적, 시각적인 전달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⁶⁸⁾ 또한 네바다 주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괴롭히는 행위 뿐 아니라 학교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

68) Section 1. Chapter 388 of NRS is hereby amended by adding thereto the provisions set forth as sections 1.5, 2 and 3 of this act.

Sec. 1.5. “Bullying” means a willful act or course of conduct on the part of one or more pupils which is not authorized by law and which exposes a pupil repeatedly and over time to one or more negative actions which is highly offensive to a reasonable person and is intended to cause and actually causes the pupil to suffer harm or serious emotional distress.

Sec. 2. “Cyber-bullying” means bullying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c. 3.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the communication of any written, verbal or pictorial information through the use of an electronic devic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 telephone, a cellular phone, a computer or any similar means of communication.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이버블링은 형법상으로 misdemeanor로 처벌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위협이 다른 학생이나 학교 근로자들이 위협, 고통, 괴로움을 느끼거나, 공공 불안을 야기하거나, 공립학교 운영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gross misdemeanor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10) 뉴햄프셔주

뉴햄프셔주에서는 2000년에 HB1523을 통하여 Pupil Safety and Violence Prevention Act를 제정하였고 이에 지역학교 이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각 학교들은 블링과 사이버블링 및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해야하여야 하며, 특히 교내 근로자들은 교내 따돌림의 정보를 입수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고 그 신고를 하는 근로자들은 후에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건들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였다. 이 Pupil Safety and Violence Prevention Act는 2010년 HB1523이 통과되면서 RSA193-F:6~RSA193-F:10까지의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조항은 각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블링과 사이버블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것들은 블링과 사이버블링의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을 매년 교육청(department of education)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에는 학생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된 사례들을 교육청은 매년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지사나 상하원의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블링 및 사이버블링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피해사례들을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선의일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이 면책된다. (“immune from civil liability for good faith conduct arising from or pertaining to the reporting, investigation, findings,

recommended response, or implementation of a recommended response under this chapter.”) 그 밖에 학교에서는 각각 이를 방지하는 정책들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1) 뉴 욕

뉴욕에서는 2011년에 “Law to Encourage the Acceptance of All Differences (LEAD)”라는 법안이 제시되어 2012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여기에서는 학생 내에서 교육과정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고 상당한 방해물 줄만한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사이버블링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탕이 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의무적인 정책들이 열거되었으나, 학교 당국이 교내 이외의 사이버블링 행위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입법제시되어 2013년 7월부터 효력을 가지게 될 교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off-campus의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 단, off-campus에서 일어난 행위가 교내 분위기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예견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뉴욕에서는 사이버블링을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이 제안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제안이 채택되지는 않았다.

(12) 노스캐롤라이나

2009년 HB1261를 통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법 Chapter 14의 60조에 사이버블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미성년자를 괴롭히거나 고문할 목적으로 거짓된 프로필을 온라인 상에서 제작하거나 채팅방에 초대하거나,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 본인 또는 타인에게 개인적이거나 성적인 정보를 온라인 상에 올리는 것을 장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후견인까지 그 보호 범위를 넓혀 그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이버블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상에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직접 내용물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복사하여 전파하는 것도 사이버블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피해자가 18세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Class 1 misdemeanor로 처벌받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Class 2 misdemeanor로 처벌받는다.⁶⁹⁾

69) § 14-458.1. Cyber-bullying; penalty.

- (a) Except as otherwise made unlawful by this Article,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use a computer or computer network to do any of the following:
- (1) With the intent to intimidate or torment a minor:
 - a. Build a fake profile or Web site;
 - b. Pose as a minor in:
 1. An Internet chat room;
 2. An electronic mail message; or
 3. An instant message;
 - c. Follow a minor online or into an Internet chat room; or
 - d. Post or encourage others to post on the Internet private, personal, or sexual information pertaining to a minor.
 - (2) With the intent to intimidate or torment a minor or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 a. Post a real or doctored image of a minor on the Internet;
 - b. Access, alter, or erase any computer network, computer data, computer program, or computer software, including breaking into a password protected account or stealing or otherwise accessing passwords; or
 - c. Use a computer system for repeated, continuing, or sustaine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luding electronic mail or other transmissions, to a minor.
 - (3) Plant any statement, whether true or false, tending to provoke or that actually provokes any third party to stalk or harass a minor.
 - (4) Copy and disseminate, or cause to be made, an unauthorized copy of any data pertaining to a minor for the purpose of intimidating or tormenting that minor (in any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printed or electronic form of computer data, computer programs, or computer software residing in, communicated by, or produced by a computer or computer network).
 - (5) Sign up a minor for a pornographic Internet site.
 - (6)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minor or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sign up a minor for electronic mailing lists or to receive junk electronic messages and instant messages, resulting in intimidation or torment of the minor.
- (b) Any person who violates this section shall be guilty of cyber-bullying, which

(13) 오레곤

2007년부터 Oregon Revised Statutes §339.351에서 사이버블링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규정은 2011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전자기기통신을 이용한 괴롭힘, 협박, 희롱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교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행위도 사이버블링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이를 방지하고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레곤 주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내 근로자들을 상대로 블링 및 사이버블링의 사건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보고할 것을 장려(encourage)하는 데에 그치는 반면, 교내 근로자에게는 의무화(must)하고 있다.

(14) 유 타

유타 주에서는 2001년에 SB304가 통과되면서 사이버블링에 대한 정의 규정이 생겨났다. 전자 통신기기를 통하여 타인을 괴롭히고 해를 가하는 행위이라고 한 것은 타주들과 유사하나, 유타 주에서는 고의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부주위(reckless disregard)로 인한 가해행위까지 사이버블링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이 동의를 구했거나, 자발적으로 전자통신기기에 접근하더라도 사이버블링에 해당된다.⁷⁰⁾

offense shall be punishable as a Class 1 misdemeanor if the defendant is 18 years of age or older at the time the offense is committed. If the defendant is under the age of 18 at the time the offense is committed, the offense shall be punishable as a Class 2 misdemeanor.

70) (3) “Cyber-bullying” means using the Internet, a cell phone, or another device to send or post text, video, or an image with the intent or knowledge, or with reckless disregard, that the text, video, or image will hurt, embarrass, or threaten an individual, regardless of whether the individual directed, consented to, or acquiesced in the conduct, or voluntarily accessed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15) 워싱턴

워싱턴 주에서는 RCW 28A.300.285에 따르면 사이버블링은 블링의 한 현상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블링은 전자통신기기 상에서, 서면으로, 육체적, 구두로 행해질 수 있는 데 사이버블링은 그 중 전자통신기기 상에서 행해지는 블링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블링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육체적 피해를 가하거나, 피해학생의 학업에 지대한 방해가 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상당하게 교육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학교 운영에 상당한 방해가 될 시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ff-campus의 행위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의 범위를 살펴볼 때 간접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주에서도 타주에서와 유사하게 학교가 반 블링, 사이버블링 정책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2. 그 이외의 주에서의 Cyberbullying규제 방법

현재 사이버블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에서도 사이버블링 현상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에서는 cyber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electronic harassment”와 같은 우회적으로 사이버블링을 규제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규율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에서도 사이버블링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기존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한편, 이러한 주에서도 사이버블링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연방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Megan Meier사건 이후 2009년에 캘리포니아 의원 Linda Sanchez이 연방의회에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를 제안하였

다.⁷¹⁾ 제안된 이 법은 적대적이고 반복적인 전기통신기기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괴롭히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목적으로 주(州)간으로 또는 외국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는 행위(“transmit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any communication, with intent to coerce, intimidate, harass, or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using electronic means to support severe, repeated, and hostile behavior”)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최대 2년의 구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사이버블링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 법안의 규율 대상행위를 공립학교의 범위를 넘어선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넓은 분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따르면 학생 뿐 아니라 어른까지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현재까지 통과되거나 입법제시되어 있는 사이버블링 법안보다도 규율대상이나 보호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까진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공화당인 양당 모두가 이 법안은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⁷²⁾

반면, 연방의회에서 제안된 “Student Internet Safety Act”⁷³⁾는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사이버블링을 규율하고자 하는 입장이어서 좀 더 관대한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에 의해서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학교들은 연방정부가 그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가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Student Internet Safety Act는 2009년에 하원을 통과하였다.⁷⁴⁾

71)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H.R. 1966, 111th Cong. (2009).

72) Alison Virginia King, 앞의 논문, 864쪽.

73) Student Internet Safety Act of 2009, H.R.780, 111th Cong. (2009).

74) House Passes Student Internet Safety Act. <http://votesmart.org/public-statement/432276/>

Ⅲ. 미국의 주별 사이버블링 법제의 특징 분석

여러 주에서의 사이버블링 규제형태를 보면 각각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각 주의 규제 특징을 크게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발생한 사이버블링만을 규제 - 주에 따라서 학교에서 일어나거나 학교와 관련있는 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이버블링만을 규제하는 유형(on school premises or at a school bus stop, or at a school sponsored activity or function...), 학교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 사이버블링까지 규제하는 유형, 학교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어났지만 학교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cyberbullying is prohibited away from school if it disrupts school activity)만을 규제하는 유형,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유형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내에서 일어나거나 학교와 관련 있는 활동을 하는 도중에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학교 소유의 전자기기를 사용 - 보통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교구가 소유, 임대하고 있는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아칸소주와 메사추세츠주는 학교소유나 학교임대의 전자기기가 아닌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피해의 정도 표시- 사이버블링 법제들이 피해의 정도를 비교적 까다롭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에서 다음의 정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1)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 (2) 재산상의 손실, (3) 사람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4) 학교 운영의 방해가 요건에 해당된다.⁷⁵⁾ 적대적

house-passes-student-internet-safety-act

75) (1) physical or emotional harm, (2) damage to property, (3) reasonable fear of harm

인 교육환경(hostile educational environment)일 것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보는 주도 있다.

4.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보호- 아칸소주를 포함한 몇몇 주는 사이버블링의 보호대상을 학생에서부터 교직원까지 넓게 보기도 한다.
5. 전자통신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종류를 언급- 사이버블링은 전자통신기기를 통해서 범해지기 때문에 조문에 “electronic means” 또는 “electronic communication”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다. 어떤 전자 통신기기들이 이에 해당되는 지는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몇몇 주에서는 이에 대한 예시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보통 블로그, 웹페이지, 웹사이트, 핸드폰, 무선호출기 등이 예시된다.
6. 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규제- 대부분의 사이버블링 주는 공립학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립학교를 보호하고 있는 주는 메사추세츠 주가 유일하다.
7. 사이버블링의 신고 의무- 모든 주에서는 사이버블링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를 금지하고 예방할 정책을 채택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사이버블링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신고를 하였을 때에 이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주도 있다.
8. 신고한 사람의 면책- 사이버블링을 신고하는 도중에 생기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면책해주는 조항을 포함하는 주가 있다. 대표적으로 뉴햄프셔주에 주는 선의일 경우에 신고하는 도중에 생기는 위반사항 뿐 아니라, 후의 사이버블링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면책을 해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to the person or his or her property, (4) disrupting the operation of the school

9.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시행의 의무- 사이버블링을 방지할 정책을 채택할 것이 의무화 되면서, 학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블링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 주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형태로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그리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블링에 대응할 전문적인 인력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 형법상의 죄로 규정- 사이버블링에 대해서 형법상의 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을 묻는 주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주에서 현재까지는 아칸소, 루이지아나, 미주리,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있으며, 하와이와 뉴욕은 현재 사이버블링을 형법상 규정으로 다룰 것에 대해서 입법제시 되어있다.

제 4 절 사이버블링 법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I. 개 관

사이버블링 금지 법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의 제1수정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와 결부되어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하는 미국에서 사이버블링을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미국의 사이버블링 법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립 학교(public-school forum)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 판시한 미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학생들의 인터넷상에서의 표현과 관련해서 판시한 선례가 없으나, 하위법원이나 입법자들, 학

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 판시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적용하는 등 현재까지도 사이버블링과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⁷⁶⁾⁷⁷⁾

II. 연방대법원의 판례

1.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Tinker케이스에서는 학생들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로 팔에 검은 완장을 차고 등교하여 학교의 완장 제거 요구가 불응한 학생들을 정학시킨 사건이다. 이 판결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의 교내의 활동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비교 형량을 통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판단 기준은 학생들의 표현이 다른 학생들의 권리나 학교 운영에 상당한 방해(“substantial disruption”)가 있었는가의 여부라고 판시하였다.⁷⁸⁾ 학생의 표현이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가져왔다고 해서 ‘상당한 방해’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며 이를 이유로 학생들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상당한 방해’의 기준을 제시한 이 Tinker케이스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흔히 ‘Tinker Standard’로도 불린다.⁷⁹⁾

76) John O. Hayward, “Anti-Cyber Bullying Statutes: Threat to Student Free Speech”, Selected Works, 2010.

77) Renee L. Servance, “Cyberbullying, Cyber-harass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Schools and the First Amendment”, Wisconsin Law Review, 2003.

78) “Student speech rights could be restricted only if they “substantially interfered with the work of the school or impinged upon the rights of other students.” 393 U.S. 503, 504 (1969).

79) Alison Virginia King, 앞의 논문, 866쪽.

2. Bethel School District v. Fraser

1986년의 연방대법원 판례로, 학교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권한에 대해서 인정한 판례이다. 이 사건은 600여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노골적인 성적 연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러한 연설은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학교에게 그러한 연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학교는 저속하며 공격적인 표현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표현을 인정하는 것은 학교의 본연의 임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위에 벗어난 표현의 형태는 명예훼손,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 공격적인 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이버블링과 가장 연관이 되는 것은 “true threat”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의 형태로서, “true threat”는 표현한 사람의 불법적인 폭력을 저지르고자하는 의도를 합리적인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⁸⁰⁾

3.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이 케이스는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물에 대해서 학교가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건이었다. 여기서는 학교 교장이 학교 신문에 십대 임신과 이혼에 관하여 게재한 글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교육적인 목적(“legitimate pedagogical concerns”)을 위해서 교육자들에게 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다.⁸¹⁾ 이 판결은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한

80) Bethel Sch. Dist. v. Fraser, 478 U.S. 675, 677-678 (1986).

81) Hazelwood Sch. Dist. v. Kuhlmeier, 484 U.S. 260, 273 (1988).

정하고 있지만 몇몇 연방의 하급법원에서는 이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⁸²⁾

4. Morse v. Frederick

2006년의 판결로 학교가 학생이 교내 규칙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이를 옹호하는 상징적인 표현 및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학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Joseph Frederick은 고등학생이었는데 “Bong HiTS 4 Jesus”라는 배너를 드러내자 학교는 이것이 불법 마약을 옹호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Joseph는 이를 거부하였고, 학교가 그를 정학시켰다. 이 판결의 의미를 갖는 것은 Joseph의 행위가 교내 영역(school territory)이 아닌 교외(off campus)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이 교내 영역을 확대 해석하여 학교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확대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는데 그 중에는 (1) 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외 활동에 참여에 대한 허락을 하였고, (2) 그 사건이 학교의 수업시간 때에 이루어졌고, (3) 학교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참여하였음이 있었다.⁸³⁾ 이 사건은 Tinker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떠한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I. 소 결

앞에서 살펴본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판례들을 살펴볼 때에, 사이버블링 법제가 합헌적인 테두리 안에서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교내에서나 혹은 학교가 후

82) Alison Virginia King, 앞의 논문, 868쪽.

83) Morse v. Frederick, 551 U.S. 393, 398-401 (2007).

원하는 활동에 대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교육환경에 상당한 방해 (“substantial and material disruption”)가 있을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아칸소주의 사이버블링 법은 Tinker기준을 반영하여 사이버블링이 “material and substantial disruption”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추론한 기준도 오프라인에서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없다. 사이버블링은 교내, 교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것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미 연방대법원은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판시한 바가 없으며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교외(off campus)로 한정을 짓는다면 현재의 사이버블링 법제는 그 의의를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사이버블링을 저지른 가해 학생은 법의 규제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현재 미국 내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 5 장 시사점 및 결론

제 1 절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의 시사점

I. 법체계 차이와 한계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국가로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각 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법은 각 주가 처한 개별적 환경과 사항들을 보다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장감있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제개정이 비교적 쉬워서 매우 신속히 이뤄진다. 반면에 성문법체계인 우리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법률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개정이 매우 어렵고 법률 제정시 일부 시민이 아닌, 전 영토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입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주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물론 앞의 제4장 제3절 III. 미국의 주별 사이버블링 법제의 특징 분석에서 여러 주의 사이버블링 법률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잘 정리되고 있으나- 우리의 입법시 의미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정리하면서 도입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관련 미 법률의 주요 쟁점과 도입가능성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사이버블링 관련 미국 여러 주들의 법률들을 우리의 실정과 비교해서 쟁점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향후 우리의 입법방향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구체적 내용

첫번째, 미국은 교내 ‘사이버블링’에 대한 입법마련 이전에 먼저 ‘블링’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블링에 해당하는 “따돌림”에 대해서 “사이버따돌림”이 별도로 신설된 2012년 3월 21일 개정시의 불과 두달전인 2012년 1월 26일에서야 학폭법 제2조 정의규정에 제1호의2로 신설되었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사이버블링은 물론이거니와 블링에 대해서조차도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내놓은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뚜렷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블링은 사이버공간을 이용 도구로 하여 발생하는 블링의 한 현상이므로 블링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는 사이버블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블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함께 세우면서, 여기서 따로 ‘사이버’라는 특성을 고려한 사이버블링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사이버블링의 적용대상, 즉 행위주체와 행위객체의 설정문제가 남는다. 이는 사이버블링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행위객체의 기본권인 행동의 자유권 등은 축소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이버블링은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를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국가의 또다른 통제와 다름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범위는 일정 기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이버블링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주법에서도 일단 ‘학내’에서 발생한 블링에 대해서만 문제로 설정하면서, 이 중 많은 주에서 비록 학교외에서(off-campus) 발생한 사이버블링이라 하더라도 학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주법의 취지는 또한 ‘학교 소유의 전자기기를 사용’하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사이버블링의 법규정을 갖고 있는 미국의

많은 주들은 ‘학교가 소유하거나, 학교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등’을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수업)시간’이거나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사이버블링에 대해 규제토록 함으로써, 보다 더 쉽게 ‘학내’ 발생(내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의 사이버블링만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적용범위는 현재 우리의 학폭법의 최근 개정취지와도 일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학폭법의 가장 최근 개정인 2012년 3월 21일 개정은 기존 학폭법에서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불합리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함으로써 학교 밖의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학폭법의 취지로 보건데, 학폭법에 근거한 사이버블링의 적용범위는 그 행위의 주체 및 객체는 ‘학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라는 특성상 상대방이 ‘학생’임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이 ‘학생’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러한 사이버블링은 ‘학생에 대한 사이버블링’이라는 고의가 없으므로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것이다.

세번째, 피해범위 산정의 문제이다. 사이버블링을 규제하는 미국의 몇몇 주법에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블링의 피해산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사이버블링 주법에서는 피해를 단순화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 ② 재산상 손실, ③ 사람 또는 그의 재산 침해에 대한 합리적 예견가능성, ④ 학교운영의 방해 등이 그것이다.

현재 학교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학폭법’에서는 (사이버)블링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손해배상규정과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과한 것은 아닌가 싶다. 학폭법이 보다 더 강한 실효성을 갖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동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특정 조치 외에도 민사적·형사적 구제방안도 함께 규정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이를 위한 피해범위 산정도 함께 제시되기를 바란다.

네번째, 보호대상 범위의 문제이다. 아칸소주를 포함한 몇몇의 주에서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사이버블링의 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보건데 미국의 사이버블링 방지 입법은 피해 학생 개인을 중점에두고 있다기 보다는 보다 더 넓은 측면의 학교 전반적인, 즉 공간적인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비단 학생이 아닌 교직원에게까지 사이버블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폭법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학교라는 공간적인 문제인식보다는 ‘학생’ 개인의 피해를 중심으로 하는, 즉 행위객체(사람)에 대한 피해를 중심으로 한다. 이미 성인인 교직원까지 학폭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우리나라 현행 학폭법의 입법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번째, 사이버블링의 이용수단 범위의 확정문제이다. 사이버블링 관련 미국의 주법에서는 대부분 “electronic means(전자수단)” 또는 “electronic communication(전자통신)”을 이용한 블링을 사이버블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불과 몇몇 주법에서만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폭법 제2조 제1호의3에서도 “사이버따돌림”을 정의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더 많은 정보통신수단을 열거할 필요가 있을지 논의해볼만 한데, 비록 정의규정에서는 아니더라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나아가 분쟁의 소지가 있을만한 사이버블링의 유형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사이버블링을 보다 상세하게 규

정하는 학폭법의 입법안에서는 사이버블링에 이용되는 행위수단, 즉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블링의 침해행위유형을 시행령에서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법률은 모든 행위수단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열할 수는 없다. 이는 법률언어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고, 또한 ‘사이버’를 이용하게 하는 각종 정보통신수단이 시간차를 두고 급속도로 발전하므로 이를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법률에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대강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행위자(잠재적 가해학생)로 하여금 학폭법상 규제가능한 사이버블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예견가능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⁸⁴⁾ 구체적으로는 휴대폰문자, sns(social-networking service), 이메일, 블로그, 인터넷게시판 등등이 될 수 있겠다.

여섯번째, 사이버블링 관련 규정이 있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사이버블링도 보호하는 메사추세츠 주만 제외하고는 ‘공립학교’만 사이버블링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학교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우리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공립과 사립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큰 차등 없이 영향력을 받으며 학폭법에서의 ‘학교’란 국공립과 사립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블링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법률규정이 마련될 경우, 특별히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일곱번째, 사이버블링의 신고의무이다. 사이버블링 관련 규정이 있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사이버블링에 대해서 학교에 신고를 하도록 하

84) 이러한 행위수단의 명확성은 뒤에서 살펴볼 예방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이버블링에 대한 규제의 주체가 법무부 및 경찰 등의 당국이 아닌 학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 사이버블링은 피해대상학생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 보다는, “학교내”의 문제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이버)블링을 포함한 학교폭력은 그 대응 주체 및 책임에 있어서 학교가 배제될 수는 없다. 이는 학교가 학생 개인을 지도 및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폭법에서는 교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으며(제 12조), 나아가 학교폭력 전문 상담교사와 전담기구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더불어 실제로 학교폭력 발생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여 학교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받은 기관은 이를 해당학생들(가해학생, 피해학생)의 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는 다시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그런데 우리의 학폭법은 그 규정에서 보여지듯이 전형적인 학교‘폭력’, 즉 무력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폭력’에 비중을 두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사이버블링을 포함한 블링은 유형력의 행사보다는 무형력의 행사가 많고, 더욱이 사이버블링의 경우에는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의 특성상 피해학생의 피해가 실제로 눈에 안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⁸⁵⁾ 따라서 기존의 신고체계와는 다른, 사이버블링의 속성을 고려한 차별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특정학생이 담임교사를 비롯한 특정 교사를 만나는 등의 신고는 자칫 제2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비공개 등으로

85) 실제로 2011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S중학교 여중생 자살사건은 친구의 왕따문제를 담임교사에게 폭로했다가 이 사실에 가해학생들에 알려지고 심적 부담감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또는 정기적인 학생상담을 통해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의심받지 못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세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신고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신고를 받은 후 교사의 바람직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등이 관련 상담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번째, 사이버블링 관련 규정을 제정한 미국의 주법에서는 사이버블링 신고 도중 발생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 면책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블링 신고 도중 위반할 경우의 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면책조항의 제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아홉번째, 학교직원 대상의 전문적인 교육시행의무이다. 미국의 사이버블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이버블링 방지에 대해 학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블링 대응 전문인력 마련도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우리는 학폭법에서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의규정만 2012년 3월에 신설했을뿐 그 외 다른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폭법 제1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의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블링이 비록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기는 하나, 다른 학교폭력과 함께 예방교육이 실시될 경우, 외부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이버블링의 교육은 그 비중이 작거나 외면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학교에서 폭력은 유형력의 행사도 문제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무형력의 괴롭힘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낮아 훨씬 더 잦은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학생들의 고통은 눈에 띄지 않지만 훨씬 더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이 바로 자살

이라는 극단적 형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블링에 대해서만 보다 더 집중적이고 중점적인 예방메뉴얼과 예방교육의 마련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열번째, 법적 책임이다. 미국의 사이버블링 규정을 두고 있는 일부 주의 경우(아칸소, 켄터키, 루이지아나⁸⁶), 미주리,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형사상 책임도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하와이주⁸⁷와 뉴욕주도 이러한 입법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물론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주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당연히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책임문제는 예방적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로 보인다. 현재 학교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수행자에 대한 비밀침해(제21조)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마련해두고 있을 뿐(제22조 제1항),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 적용을 통한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도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일일이 관련 다른 법률을 찾아볼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심지어 교사들조차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의 유형에 형법의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기란 어렵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사이버블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가능한 민·형사책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입법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학폭법 뒤에 벌칙규정의 장을 마련한 뒤,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과태료규정 외에 독자적인 형사책임 규정을 마련한 뒤, “다른 법률에 없는 경우 이 법을 따른다”라고 하여 다른 형법 및 특별법과 상충될 경우 그 법에 우선하나, 다른 법규정이 없는

86) 구체적으로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사이버블링에 대해 벌금형(USD500불이하) 뿐만 아니라, 자유형(6개월 미만)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87) 하와이주에서는 민사적 벌금(Civil Penalties)으로서 USD100불 이하의 벌금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경우 동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두 번째 방법은 뒤의 벌칙규정이 아닌, 중간에 예방교육의 한 조문을 마련한 후 특정 조항에 “다음과 같은 경우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규정한 후, 각 호에 처벌가능한 사이버블링의 행위유형들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예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위유형들에 대한, 일정한 제재방식을 함께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어떤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학교, 학교 관계자 및 나아가 학부모에 대해서도 이러한 처벌가능성 있는 사이버블링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에 일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한번째,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학부모 및 후견인’의 참석 문제이다. 블링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 및 정부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가 예방교육에 있어서 ‘학부모 및 후견인’ 참석의 의무조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폭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2항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교육실시의 대상을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하고 있으며 학기별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올해 2012년 3월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으로써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면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조항은 권고규정일뿐 의무규정은 아니다. 즉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포함한 그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있어서 학부모 참석’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학부모 참석의 사이버블링 예방프로그램’을 학교 및 교육부에서 만들되 참석못하는 학부모에게 있어서

는 관련 내용의 공지를 전달한 후, 내용을 숙지했다는 등의 서면 날인을 받는 등의 어떤 실효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소 결

앞에서는 사이버블링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미국의 주법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입법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일부 내용의 경우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내용은 우리와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독자적인 법률 내용으로 가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결 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늦기는 했으나 올해 2012년 3월 개정(5월 1일 시행)으로 동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정의규정에서 ‘사이버따돌림’을 추가하여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임을 예고하였다. 더 나아가 제2조 제1호의3에서 ‘사이버따돌림’을 기존의 ‘학교폭력’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기까지 함으로써 사이버따돌림을 통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법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한 것 외에는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별도의 다른 규정은 없어서 사이버따돌림 내지 사이버블링에 대한 대응 입법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학폭법 외의 정통망법이나 형법 등에서 사이버블링 관련한 일정한 행위유형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산발적인 법규정들은 사이버블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대응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실제로 학교폭력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는 사이버블링에 대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 더욱이 학교폭

력은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블링은 기존의 정통망법이나 형법 등의 범죄구성요건으로부터 형사처벌을 통한 사후적 대응이 우선시되기 보다는 예방 등을 통한 사전적 대응이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의 입법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사이버블링을 중심으로 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단일화된 대응체계적 구조를 가진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이버블링의 대상범위를 학교 내로 좁힐 것인지, 전 연령대의 금지규정으로 할 것인지 하는 논란은 남는다. 두 번째의 입법방법은 기존의 학폭법에 ‘사이버블링’을 좀 더 구체화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안에 대한 내용을 갖는 보다 더 많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폭법의 신설된 규정에서 사이버블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정통망법과 형법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된 법적 대응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입법방안 중에서 두 번째의 방안, 즉 기존의 학폭법 내에 사이버블링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입법이 병렬적이지 않고 또한 제정도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 입법방안 보다는 두 번째의 입법방안이 보다 더 실현될 가능성 크다고 보여진다. 또한 둘째, 사이버블링은 물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발생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서 문제되는 사이버블링과 성인에게서 문제되는 사이버블링은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고, 따라서 나아가 그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둘은 다르게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경우 ‘교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사이버블링 대응의 주체에 있어서 법원이 아닌 ‘학교’가 우선적으로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내에서 별도의 예방프로그램 및 별도의 대책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 있고 바람직하게 보인다.

참고 문헌

1. 외국 문헌

Alison Virginia King, “Constitutionality of Cyberbullying Laws: Keeping the Online Playground Safe for Both Teens and Free Speech”, *Vandervilt Law Review*, 2010.

Black’s Law Dictionary 448, 8th ed. 2004.

John O. Hayward, *Anti-Cyber Bullying Statutes: Threat to Student Free Speech*, Selected Works, 2010.

Naomi Harlin Goodno, “Cyberstalking, a New Crime: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State and Federal Laws”, *Missouri Law Review*, 2007.

Renee L. Servance, *Cyberbullying, Cyber-harass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Schools and the First Amendment*, 2003. (2003 WILR 1213)

2. 국내 문헌

권오걸, 사이버범죄와 대응전략, 법학연구 제36권, 2009.11.25.

권현영/배 영/홍승희/황성기, *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 서울경제경영 출판사, 2008.

김성천,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중앙법학 제12집 제1호 2010년 3월, 2010.

김혜원,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2011.5.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 이상현, 미국 사이버범죄의 현실, 법, 실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임상수, 사이버 불링에 대한 두 가지 대응책: 미국의 사례, 행정안전부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왕따 진단과 해법” 세미나 자료, 2011.12.5.
- 조희정, 이슈와 논점 제457호 “청소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의
현황과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2.5.23.
- 홍승희, 명예 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2009.12.
- 홍승희, 정보통신범죄의 전망,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2007.

3. 인터넷 자료

- <http://www.ncsl.org/issues-research/educ/cyberbullying.aspx>
- <http://www.ncsl.org/issues-research/justice/cyberbullying-and-the-states.aspx>
- <http://www.bullyingstatistics.org/content/cyber-bullying-statistics.html>
- http://www.stopcyberbullying.org/what_is_cyberbullying_exactly.html
- <http://www.cyberbullying.us/research.php>
- <http://www.cyberbullying.us/publications.php>
- http://www.cyberbullying.us/Bullying_and_Cyberbullying_Laws.pdf
- http://www.cyberbullying.us/Cyberbullying_Identification_Prevention_Response_Fact_Sheet.pdf
- <http://www.newyorklawjournal.com/PubArticleNY.jsp?id=1202519778390&slreturn=20120631030236>
- <http://csriu.org/cyberbully/docs/cblegislation.pdf>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08010332320710040>

http://www.newyorklawjournal.com/PubArticleNY.jsp?id=1202519778390&EMail_Text_Facebook___Lawsuit_Legal_Minefield_of_Cyberbullying&slreturn=201209212139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1280103142405300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7/2012081701953.html

<http://www.consumerreports.org/cro/magazine-archive/2011/june/electronics-computers/state-of-the-net/online-exposure/index.htm>

http://en.wikipedia.org/wiki/Suicide_of_Megan_Meier